국가 공사계약자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이 정보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은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정보를 국민의 생활중심으로 재분류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된 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데이터 정책에 따라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은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으며, 영리 목적의 이용을 포함하여 자유로운 활용이 보장됩니다. 이 경우 출처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http://www.easylaw.go.kr)임을 명시해 주시고, 단순 인용이 아닌 영리목적의 이용이거나 자료의 상당 부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법제처 법제정보담당관(044-200-6900)으로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 중 제3자가 저작권을 갖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원 저작자의 저작권 정책 및 「저작권법」에 따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위조 · 변조하거나 생활법령에 포함된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저작권법」 제136조부터 제138조까지)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 공사계약자]

국가 공사계약이란 국가기관이 당사자 일방이 되어 계약상대방인 사인(私人)과 공사(工事)계약을 체결하여 행정수요를 충족함과 동시에 사법상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말합니다.
이 콘텐츠에서는 국가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계약 확인방법, 계약체결 · 낙찰자 결정방법 및 절차, 계약의 이행, 계약불이행 등에 대한 조치 등 국가기관과 공사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법률정보를 제공합니다.

국가 공사계약자 1
1. 국가 공사계약자 법제 개관 5
1.1. 국가 공사계약 개요 5
1.1.1. 국가 공사계약 개요 5
1.2. 국가 공사계약 관련 법제 8
1.2.1. 국가 공사계약 관련 법령 8
2. 입찰에 따른 계약 15
2.1. 경쟁방법 15
2.1.1. 일반경쟁입찰 15
2.1.2. 제한경쟁입찰 15
2.1.3. 지명경쟁입찰 21
2.2. 입찰참가자격 22
2.2.1. 입찰참가자격 22
2.2.2. 입찰참가자격 등록 25
2.3. 입찰 절차 27
2.3.1. 입찰공고 등 27
2.3.2.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30
2.3.3. 현장설명 31
2.3.4. 입찰참가 신청 32
2.3.5. 입찰보증금 납부 34
2.3.6. 입찰서 등의 제출 37
2.4. 입찰의 성립 및 무효 39
2.4.1. 입찰의 성립 및 무효 39
2.5. 낙찰자 결정 41
2.5.1. 낙찰절차 41
2.5.2. 적격심사 44
2.5.3. 종합심사낙찰제 46
2.6. 대형공사계약 49
2.6.1. 대형공사계약 개관 49
2.6.2. 일괄입찰 51
2.6.3. 대안입찰 54
3. 수의계약 58
3.1. 수의계약 개관 58
3.1.1. 수의계약 대상 58
3.1.2. 수의계약대상자의 자격 59
3.2. 견적서 제출 60
3.2.1. 2인 이상의 견적서 제출 60
3.2.2.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62
4. 계약의 체결 65
4.1. 계약의 성립 65
4.1.1. 계약체결 65
4.2. 계약의 방식 67
4.2.1. 공동계약 67
4.2.2. 그 밖의 계약 73
4.3. 계약의 보증 75
4.3.1. 계약이행 보증 75
4.3.2. 손해보험 가입 77
4.3.3. 하자보증 78

5. 계약의 이행 83
5.1. 계약의 이행 83
5.1.1. 계약이행 83
5.2. 계약금액 조정 84
5.2.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84
5.2.2.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87
5.2.3.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89
5.3. 공사대가 지급 90
5.3.1. 선금 지급 90
5.3.2. 기성대가 지급 93
5.3.3. 준공대가 지급 95
5.4. 하자보수 97
5.4.1. 하자검사 98
5.4.2. 하자보수 98
6. 계약불이행 등에 대한 조치 100
6.1. 입찰참가 제한 100
6.1.1. 입찰참가 제한 100
6.2. 계약이행의 지체 101
6.2.1. 지체상금 101
6.3. 부실시공 등에 대한 조치 103
6.3.1. 시정조치 등 103
6.3.2. 공사계약의 해제 · 해지 104

1. 국가 공사계약자 법제 개관

1.1. 국가 공사계약 개요

1.1.1. 국가 공사계약 개요

국가 공사계약

"국가 공사계약"이란 ?

▪ 국가 공사계약은 국가기관이 당사자 일방이 되어 계약상대방인 사인(私人)과 공사(工事)계약을 체결하여 행정수요를 충족함과 동시에 사법상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말합니다.

계약의 원칙

▪ 국가기관과 사인과의 계약은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고,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 청렴계약의 체결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 포함)에서 직접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을 주거나 받지 않을 것을 약정하게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는 조건의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1항).

공사의 종류

건설공사

▪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 포함)와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

▹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철도·궤도공사업, 철강구조물공사업, 수중·준설공사업, 승강기·삭도공사업, 기계설비·가스공사업, 가스·난방공사업, 시설물유지관리업

전기공사

▪ "전기공사"란 전기설비(「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 전력 사용 장소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전기계장설비(電氣計裝設備), 전기에 의한 신호표지, 신·재생에너지 설비 중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 지능형전력망 중 전기설비(「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등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를 말합니다(「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

정보통신공사

▪ "정보통신공사"란 정보통신설비(유선·무선·광선 그 밖에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자·음향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저장·제어·처리하거나 송·수신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그 밖에 필요한 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를 말합니다(「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

소방시설공사

▪ "소방시설공사"란 설계도서에 따라 소방시설을 신설, 증설, 개설, 이전 및 정비하는 영업을 말합니다(「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

국가유산수리공사

▪ "국가유산수리"란 ① 지정문화유산, 천연기념물등, ② 임시지정문화유산, 임시지정천연기념물 또는 임시지정명승, ③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등(임시지정문화유산, 임시지정천연기념물 또는 임시지정명승을 포함)과 함께 전통문화를 구현·형성하고 있는 주위의 시설물 또는 조경 등을 보수·복원·정비 및 손상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그 밖의 공사

▪ 그 밖에 지하수 개발 사업, 소음·진동 방지 시설 설치공사, 오수처리 시설 설치공사 등이 있습니다.

국가 공사계약방법의 유형

경쟁

▪ 국가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고, 경쟁은 입찰방법이나 경매의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본문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

▪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指名)해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을 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단서).

▪ 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 계약이행의 난이도,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사회적 신인도 및 계약이행의 성실도 등 계약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사전심사기준, 사전심사절차 등의 기준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고 적격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 입찰 절차

입찰공고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		
현장설명		
↓		
입찰참가 신청		
↓		
입찰실시		
↓		
낙찰자 결정		
↓		
계약체결		
↓		
계약이행		
↓		
준공검사		
↓		
대가 청구 및 지급		
↓		
하자보수		

수의계약

▪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의계약(隨意契約)을 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단서).

▪ 소액수의계약(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



▪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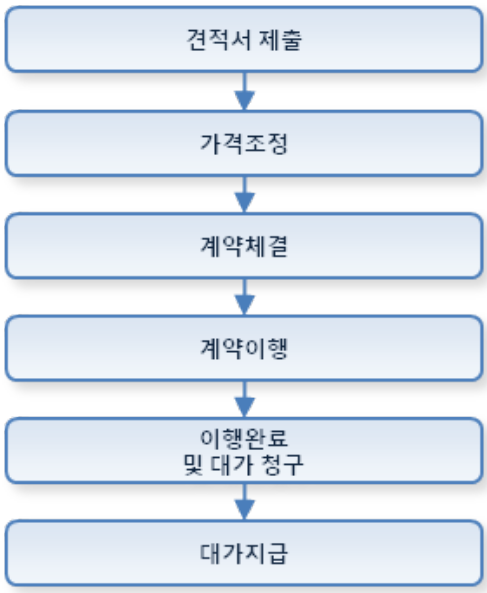

1.2. 국가 공사계약 관련 법제

1.2.1. 국가 공사계약 관련 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 범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계약에 관하여 「민법」, 「상법」 등의 다른 법령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 국가가 대한민국 국민을 계약자로 하여 체결하는 계약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해 적용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의 원칙

▹ 계약은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고,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할 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해서는 안 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 포함)에서 직접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을 주거나 받지 않을 것을 약정하게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는 조건의 계약(이하 ´청렴계약´이라 함)을 체결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1항).

▪ 계약의 방법

▹ 공사계약을 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합니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을 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 계약서 작성

▹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명백하게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본문).

√ 계약의 목적

√ 계약금액

√ 이행기간

√ 계약보증금

√ 위험부담

√ 지체상금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단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경매에 부치는 경우

√ 물품매각에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는 경우

√ 각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전기·가스·수도의 공급계약 등 성질상 계약서의 작성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과 계약자가 계약서에 기명하고 날인하거나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 대가의 지급

▹ 공사 대가는 국제관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사 결과를 검사한 후 또는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지급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의 적용범위

▪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공사의 조사,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기술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건설업의 등록 및 건설공사의 도급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1조).

건설업자의 의무

▪ 건설사업자는 다음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집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7조제3항).

▹ 시설물의 품질과 안전이 확보되도록 건설공사 및 건설용역에 관한 법령을 준수할 것

▹ 건설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등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할 것

▹ 설계도서(設計圖書), 시방서(示方書) 및 도급계약의 내용 등에 따라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할 것

▹ 건설공사 실적, 기술자 보유현황, 재무상태, 그 밖에 시공능력과 관련된 정보를 거짓으로 제공하거나 광고하지 아니할 것

건설업자의 자격제한

▪ 발주자는 도급하려는 건설공사의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의 필요성, 전문분야에 대한 시공역량,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현지여건 등을 고려해서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업자에게 도급해야 하며, 수급인은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해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하도급 계약 포함. 이하 같음)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해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1항).

▪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도급금액, 공사기간 등을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 보관해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2항).

건설업자의 손해배상책임

▪ 건설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44조제1항).

▹ 건설사업자는 위에 따른 손해가 발주자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주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44조제2항).

▪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하수급인과 연대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44조제3항).

▹ 수급인은 위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면 배상책임이 있는 하수급인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44조제4항).

※ 법령용어해설

· 도급 : “도급”이란 원도급, 하도급, 위탁 등 그 명칭과 관계없이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공사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1호).

· 하도급 :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해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2호).

「전기공사업법」

전기공사의 분리발주

▪ 전기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해야 합니다(「전기공사업법」 제11조제1항).

▪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 등 다른 업종의 공사관리와 분리발주해야 합니다(「전기공사업법」 제11조제2항).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분리발주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전기공사업법」 제11조제3항 및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

- 재난 발생에 따른 긴급복구공사
- 국방 및 국가안보 등과 관련하여 기밀을 유지해야 하는 공사
- 가설 전기공사
- 전기시설용량이 10킬로와트 이하인 소규모 전기공사(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발주하는 공사는 제외)
- 원자력·화력·열병합·수력·조력 발전소의 주설비(터빈, 보일러 등 전기를 생산하는 주된 설비를 말함) 공사
- 신기술로 지정·고시되고 보호기간 내에 있는 새로운 전력기술을 적용하는 전기공사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로 시행되는 공사인 경우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 그 밖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민간투자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에 따른 공사로서 공사의 성질상 분리하여 발주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전기공사업자의 자격

▪ 전기공사는 전기공사업자(「전기공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전기공사업의 등록을 한자)가 아니면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습니다(「전기공사업법」 제3조제1항 본문).

-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자는 위에도 불구하고 수요에 의한 전기공사로서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른 전기공사를 직접 할 수 있습니다(「전기공사업법」 제3조제2항).
  - √ 국가
  - √ 지방자치단체

√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른 경미한 전기공사는 전기공사업자가 아니더라도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있습니다(「전기공사업법」 제3조제1항 단서).

▪ 국가인 발주자는 「전기공사업법」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업자에 대하여 수급자격에 관한 제한을 해서는 안 됩니다(「전기공사업법」 제13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의 분리발주

▪ 정보통신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등 다른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해야 합니다(「정보통신공사업법」 제25조 본문).

▪ 다만,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리하여 도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정보통신공사업법」 제25조 단서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25조).

▹ 특허공법 등 특수한 기술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터널·댐·교량 등 대형공사로서 분리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해서는 하자책임구분이 명확하지 않거나 하나의 목적물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 도로공사에 부수되어 그와 동시에 시공되는 정보통신 지하관로의 설비공사로서 분리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해서는 하나의 목적물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 천재지변·비상재해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로서 분리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기가 곤란한 경우

▹ 국방 및 국가안보 등과 관련하여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공사로서 분리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기가 곤란한 경우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통신구설비공사로서 분리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기가 곤란한 경우

▹ 다음에 해당하는 경미한 공사인 경우(「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제1항)

1. 간이무선국·아마추어국 및 실험국의 무선설비설치공사
2. 연면적(둘 이상의 건축물에 설비를 연결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를 말함. 이하 같음) 1천 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의 자가유선방송설비·구내방송설비 및 폐쇄회로텔레비젼의 설비공사
3. 건축물에 설치되는 5회선 이하의 구내통신선로 설비공사
4. 라우터(네트워크 연결장치) 또는 허브의 증설을 수반하지 않은 5회선 이하의 근거리통신망(LAN)선로의 증설공사
5. 다음의 공사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만 참여하는 공사[6회선 이상의 근거리통신망(LAN)선로설비공사는 제외함]
   1) 서버·백업장비·주변기기 등 전산장비(이하 "전산장비"라 함)의 설치공사 및 유지보수
   2) 전산장비의 교체공사
   3) 주전산장치의 성능향상을 위한 주변기기의 설치공사
   4)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로서 구내통신선로설비·방송설비·경비보안설비와 연계되지 않은 정보시스템 구축공사
   5) 하드웨어구입비를 제외한 전체사업비 중 소프트웨어관련비(소프트웨어개발비·소프트웨어유지보수비·데이터베이스구축비 등)의 비중이 80퍼센트

이상인 정보시스템 구축공사

6. 군 및 경찰의 긴급작전을 위한 공사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공사

7. 다음의 공사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사

1) 정보통신설비의 단말기, 차량용 전화 등의 설치 또는 증설공사

2) 무선통신설비의 이전·변경·증설 또는 대체 등의 공사

3) 자기의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공사

8. 위 1.부터 4.까지, 7. 1) 및 2)의 공사와 유사한 기술수준의 공사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사

정보통신공사업자의 자격

▪ 정보통신공사는 정보통신공사업자(「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을 하고 공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아니면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습니다(「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4호 및 제3조 본문).

▪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아니더라도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있습니다(「정보통신공사업법」 제3조 단서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

▸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간통신사업자가 등록한 역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사를 시공하는 경우(도급하는 경우는 제외함)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경미한 공사를 도급받거나 시공하는 경우

▸ 통신구(通信溝) 설비공사 또는 도로공사에 딸려서 그와 동시에 시공되는 정보통신 지하관로(地下管路)의 설비공사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으로 또는 정보통신공사업자와 공동으로 공사를 도급받거나 시공하는 경우

√ 통신구 설비공사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 도로공사에 부수되어 그와 동시에 시공되는 정보통신 지하관로설비공사의 경우 해당 도로의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자

▪ 국가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통신공사업자에 대하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규정된 것 외에 수급자격에 관한 등록을 하게 하거나 수급에 관한 제한을 해서는 안 됩니다(「정보통신공사업법」 제30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의 도급

▪ 발주자는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 및 방염(이하 "소방시설공사등"이라 함)을 도급할 때에는 해당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해야 합니다(「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항제5호 및 제21조제1항).

소방시설공사의 시공

▪ 소방시설공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명령과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시공해야 합니다(「소방시설공사업법」 제12조제1항 전단).

▸ 이 경우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방시설의 구조와 원리 등에서 특수한 설계로

인정된 경우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소방시설공사업법」 제12조제1항 후단 및 제11조제1항 단서).

- 소방시설공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의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를 위해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2의 배치기준 및 배치기간에 맞게 소속 소방기술자를 공사 현장에 배치해야 합니다(「소방시설공사업법」 제12조제2항 및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3조).

「민법」

우선 적용 법률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등 공사 관련 법령에 규정이 없는 계약에 관한 사항은 계약에 관한 일반법인 「민법」에 따릅니다.

2. 입찰에 따른 계약

2.1. 경쟁방법

2.1.1. 일반경쟁입찰

일반경쟁

일반경쟁 입찰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본문).

▹ 경쟁은 입찰방법이나 입찰방법에 준하여 경매의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

▪ 일반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 계약이행의 난이도,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사회적 신인도 및 계약이행의 성실도 등 계약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사전심사기준, 사전심사절차 등의 기준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고 적격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2.1.2. 제한경쟁입찰

제한경쟁

참가자격의 제한

▪ 경쟁에 부치는 경우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단서).

▹ 제한경쟁은 입찰방법이나 입찰방법에 준하여 경매의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

▹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이행의 난이도, 규모의 대소, 수급상황 등을 적정하게 고려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 제한사항과 제한기준은 입찰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2항).

공사실적·시공능력에 따른 제한

대상

▪ 공사실적·시공능력에 따라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제2호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 추정가격이 다음의 금액 이상인 공사계약의 경우 : 시공능력 또는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 건설공사(전문공사 제외) : 30억원

√ 전문공사 그 밖의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 : 3억원

▹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계약의 경우 : 해당 공사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공사실적·시공능력의 제한기준

▪ 공사실적 및 시공능력의 제한은 다음 기준에 따릅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2항).

▸ 공사실적 : 다음의 기준에 따르되, 계약목적의 달성에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의 실적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1. 공사 실적의 규모 또는 양에 따르는 경우: 해당 계약목적물의 규모 또는 양의 1배 이내
2. 공사 실적의 금액에 따르는 경우: 해당 계약목적물의 추정가격(「건설산업기본법」 등 다른 법령에서 시공능력 적용 시 관급자재비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추정금액을 말함. 이하 같음)의 1배 이내

▸ 시공능력 : 해당 추정가격의 1배 이내

※ “실적”이란 현재 발주하려는 계약과 계약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은 물론, 이와 유사하여 계약목적 달성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과거 1건의 공사의 실적(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는 총공사의 실적)에 해당되는 금액 또는 규모(양)를 말합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제1항).

기술 보유상황에 따른 제한

대상

▪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계약은 해당 공사수행에 필요한 기술 보유상황에 따라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

기술 보유상황에 따른 제한기준

▪ "기술 보유상황"이란 다음의 경우를 말합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제2항).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또는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사무소로 개설등록을 한 기술사의 경우

▸ 기술 도입 또는 외국업체와의 기술제휴의 방법으로 해당 공사 수행에 필요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그 밖에 해당 공사 수행에 필요한 기술이나 공법을 개발 또는 보유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지역 제한

대상

▪ 추정가격이 다음의 금액 미만인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함)를 기준으로 하여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제1호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

▸ 건설공사(전문공사 제외) : 88억원

▸ 전문공사와 그 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 : 10억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공사의 현장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함)의 관할구역 안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을 말합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4조제4항제1호).

▪ 입찰참가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상의 사업장 소재를 말합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4조제4항제1호).

▪ 개인사업자가 사업장 소재지는 다르지만 사업의 종류가 동일한 복수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사업자가 그 중 한 곳을 지정한 사업장 소재지를 주된 영업소로 봅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4조제6항).

지역 제한기준

▪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함)를 기준으로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해당 공사의 현장이 소재하는 시·도의 관할구역(「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에 따른 공동혁신도시의 경우에는 해당 공동혁신도시 건설 공동 주체의 관할구역 전체를 말함) 안에 있는 자로 제한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3항 본문).

▪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 현장이 있는 시·도에 인접한 시·도(이하 "인접 시·도"라 함)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를 포함해 제한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3항 단서).

- 공사 현장이 인접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
- 공사 현장이 있는 시·도에 사업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경우

▪ 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내에서 특별시·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가 신설(편입된 경우 제외)되는 경우에는 그 신설된 날부터 3년간은 종전의 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과 신설된 특별시·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은 분리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4항).

입찰참가 통지

▪ 지역 제한 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입찰참가적격자에게 입찰참가 통지를 하여 입찰공고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3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 입찰참가 통지는 현장설명일 7일 전(현장설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7일 전)까지 해야 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5일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제2항).

유자격자 명부에 따른 제한

대상

▪ 공사를 성질별·규모별로 유형화하여 제한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기준에 따라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 이 경우에는 공사실적, 시공능력에 따른 제한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에 따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6항).

유자격자 명부에 따른 제한기준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공사를 성질별·규모별로 유형화하여 이에 상응하는

경쟁제한기준을 정하고 이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공고한 경우, 경쟁참가적격자는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항).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유형별·등급별로 경쟁참가적격자를 선정하여 등록을 하고, 공사 입찰 시마다 해당 경쟁참가적격자에게 입찰참가 통지를 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2항).

※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

1. 유자격자명부 등록대상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건, 토목 또는 건축공사업자로 등록된 자로서 입찰공고일 현재의 시공능력평가액이 88억원 이상인 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 제1호)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이하 "전문업종"이라 한다)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이하 "전문건설사업자"라 한다)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종합공사를 구성하는 전문업종을 모두 등록한 건설사업자로서 전문건설사업자의 유자격자명부에 등록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토건, 토목, 건축공사업)과 전문업종을 모두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토건, 토목 또는 건축공사업 기준으로 유자격자명부에 등록

2. 적용 대상 공사

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의 토목 및 건축공사로서 경쟁입찰 대상 공사

※ 다만, 국내입찰에서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5조에 해당되는 공사의 경우 또는 국내입찰 및 국제입찰에서 유자격자 명부를 적용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3. 등록 내용

(단위: 이상 ~ 미만)

등급	시공능력평가액 (토건, 토목, 건축)	공사배정규모(추정금액기준)		비 고
		토목공사	건축공사	
1	4200억원 이상	1400억원 이상	1200억원 이상	
2	1400억원~4200억원	900억원~1400억원	800억원~1200억원	
3	700억원~1400억원	570억원~900억원	520억원~800억원	
4	350억원~700억원	370억원~570억원	340억원~520억원	
5	200억원~350억원	220억원~370억원	210억원~340억원	
6	120억원~200억원	140억원~220억원	130억원~210억원	
7	고시금액~120억원	고시금액~140억원	고시금액~130억원	

※ 입찰 공고일 현재의 시공 능력 평가액 기준임

그 밖에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찰참가 통지

공사입찰 시마다 등록된 경쟁참가적격자 중 해당 경쟁참가적격자에게 입찰참가 통지를 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2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 입찰참가 통지는 현장설명일 7일 전(현장설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7일 전)까지 해야 하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5일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제2항).

재무상태에 따른 제한

대상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이행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쟁참가자의 재무상태에 따라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9호).

재무상태에 따른 제한기준

▪ "재무상태"란 현재 부도상태에 있거나 파산 등으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제3항).

입찰참가자격을 부당하게 제한한 사례

중복제한 금지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공사실적, 시공능력, 기술 보유상황, 지역, 유자격자 명부, 재무상태 등을 서로 중복하거나 같은 항목 내의 사항을 서로 중복적으로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5항 본문).

※ 다만, 지역 제한은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기술 보유상황 또는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과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5항 단서).

참가자격의 부당한 제한 금지

▪ 다음과 같이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제4항 단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의 사항을 중복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다만, 지역제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의 경우에는 기술 보유상황에 따른 제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과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음

▹ 특정한 명칭의 실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유사한 실적이 있는 자의 입찰참가기회를 제한하는 경우

√ 농공단지 조성공사에서 농공단지 조성실적이 있는 업체만으로 제한함으로써 사실상 공사내용이 동일한 공업단지나 주택단지 등의 조성실적이 있는 자의 입찰참가를 배제하는 사례

√ 종합문화예술회관 공사에서 종합문화회관 건립 단일공사 관람석 000석 이상 준공실적이 있는 업체로 제한함으로서 시민회관, 강당 등 사실상 내용이 같은 공사실적이 있는 자의 입찰참가를 배제하는 사례

▹ 특정기관이 발주한 준공실적만을 요구하고 다른 기관 및 민간의 실적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의 실적만을 인정함으로써 다른 공공기관 및 민간실적을 배제하는 사례

▹ 해당 공사 이행에 필요한 수준 이상의 준공실적을 요구하는 경우

√ 동일 공사에서 교량이 2개 이상 있을 경우 합산한 규모의 실적업체로 제한하여 1개 규모의 실적보유업체를 배제하는 사례

▹ 물품의 제조·구매입찰시 부당하게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 또는 모델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와 입찰조건, 시방서 및 규격서 등에서 정한 규격·품질·성능과 동등이상의 물품을 납품한 경우에 특정상표 또는 모델이 아니라는

이유로 납품을 거부하는 경우

√ 특정 수입품목의 모델을 내역서에 명기하여 품질 및 성능면에서 동등이상인 국산품목의 납품을 거부하는 사례

▹ 지역제한경쟁입찰을 하는 경우 본점이 공사의 현장이 소재하는 시·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자로 제한해야 함에도 시·군·자치구의 관할구역에 있는 자로 제한하는 경우

▹ 일반경쟁입찰이 가능함에도 과도하게 실적 등으로 제한하는 경우

√ 빗물 펌프장(유수지) 공사에서 펌프 용량으로 실적을 제한하는 사례

▹ 관련 법령 등에 따라 1개의 등록만으로 시공이 가능함에도 2개 이상의 등록을 요구하는 등 등록요건을 강화하는 경우

▹ 교량이나 도로공사 발주 시 공사의 실적을 평가하는 데 주요한 기준의 규모(또는 양)로 제한하지 않고 폭 등 독특한 실적만으로 제한하는 경우 및 폭, 연장, 경간장, 공법 등을 모두 제한하는 경우

▹ 창의성이 요구되는 건축설계 등 문화예술관련 용역에 대해서 용역수행실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의2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을 발주하면서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이 해당용역의 주요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건설사업관리 실적만을 요구하는 등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실적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2.1.3. 지명경쟁입찰

지명경쟁

지명경쟁 사유

▪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경쟁에 부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단서).

▪ 지명경쟁은 입찰방법이나 입찰방법에 준하여 경매의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

지명경쟁입찰로 할 수 있는 경우

지명경쟁입찰의 요건

▪ 지명경쟁입찰에 부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8호).

1.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기술·자재·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입찰대상자가 10인 이내인 경우
2. 건설공사로서 추정가격이 4억원 이하인 공사
3.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공사
4. 그 밖의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 6천만원 이하인 공사를 하는 경우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

지명경쟁입찰의 지명기준

지명기준

▪ 위의 1 ~ 4.에 따라 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할 자를 지명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지명하되, 경쟁원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

▹ 시공능력을 기준으로 지명하는 경우에는 해당 추정가격의 1배 이내의 자로, 시공능력 일련순위에 따라 지명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제1호가목, 제25조제2항제2호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6조제1호).

▹ 신용과 실적 및 경영상태를 기준으로 업체를 지명하되 특수한 기술의 보유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보유한 자를 지명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제1호나목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6조제2호·제3호).

√ 특수기술을 필요로 하는 공사로서 전문적인 기술의 보유자가 아니면 계약목적의 달성이 곤란한 때에는 그 기술보유자 중에서 시공능력 순위에 따라 지명합니다.

√ 특수공법을 필요로 하는 공사의 경우에 동종 공사의 시공실적의 보유자가 아니면 계약목적의 달성이 곤란한 때에는 그 실적보유자 중에서 시공능력 순위에 따라 지명합니다.

▹ 건설공사(전문공사는 제외)로서 추정가격이 3억원 이하인 공사,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그 밖의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제2호)에 시·도업체만을 지명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시·도업체의 시공능력 순위에 따라 지명합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6조제4호).

지명경쟁입찰 대상자의 지명

입찰 대상자의 지명

▪ 지명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5인 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지명하여 2인 이상의 입찰참가신청이 있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항 본문).

▪ 다만, 지명대상자가 5인 미만인 때에는 대상자를 모두 지명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항 단서).

입찰참가 통지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대상자를 지명하는 경우 각 입찰대상자에게 입찰참가 통지를 하고, 입찰참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제3항).

2.2. 입찰참가자격

2.2.1. 입찰참가자격

입찰의 참가자격

참가자격

▪ 다음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해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1.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받았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2. 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을 것
3.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받을 것

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 위의 1, 2의 요건은 관계 기관(법령에 따라 설립된 관련 협회 등 단체 포함)에서 발행한 문서로, 3의 요건은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확인하는 서류의 사본으로 각각 증명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2항).

▪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는 등록된 종목에 한하여 교부받은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3항).

입찰참가의 부당한 제한 금지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경쟁입찰참가자격 외의 요건을 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입찰참가자격의 기준일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은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3조의2제1항).

지역제한경쟁입찰의 경우

▪ 지역제한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 및 지역의무공동도급 사업의 경우에는 그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기준일(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을 말함)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3조의2제2항).

입찰참가자가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

▪ 입찰참가자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판단하고, 입찰참가자가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참가가 가능합니다(「(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3조의2제3항).

※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건설사업자와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는 계속 시공할 수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제1항).

입찰참가자격 제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

▪ 계약자 또는 입찰자(계약자 또는 입찰자의 대리인·지배인, 그 밖의 사용인 포함)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이 있은 후 지체 없이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 제118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22조제1항).

1. 계약을 이행할 때에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2. 경쟁입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3.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는 제외)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4.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 과정에서 국가에 손해를 끼친 자

5.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

6.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

7.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기술자문위원회, 그 밖에 종합심사낙찰제심사위원회, 제안서평가위원회,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을 포함)에게 뇌물을 준 자

8. 계약을 이행할 때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 규정을 위반하여 동시에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하게 한 자

9. 그 밖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입찰·계약 관련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입찰·계약을 방해하는 등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자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않거나 방해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

다. 다른 법령을 위반하는 등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

※ 입찰참가자격 제한 감경 및 면제

- 각 중앙관서의 장은 위 2. 또는 5.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부정당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실의 자진신고 등을 통하여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받은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7항).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라 시정조치만 받은 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해당 시정조치를 면제받은 경우: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 면제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만 받은 자: 다음의 구분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 감경 또는 면제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과징금을 면제받은 경우: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 면제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과징금을 감경받은 경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일수(日數)에서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일수를 감경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 감경일수(소수점 이하는 1일로 계산) =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시작일부터 그 종료일까지의 일수 x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감경받은 과징금의 감경 비율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2조 및 제43조에 따라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처분을 모두 받은 자: 해당 시정조치의 감면 여부에 관계 없이 다음의 구분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 감경 또는 면제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과징금을 면제받은 경우: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 면제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과징금을 감경받은 경우: 위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일수를 감경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세부기준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세부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와 같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

제한 내용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에 대해 제한기간 동안에는 해당 관서에서 집행하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8항).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에서 낙찰된 자가 계약체결 전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9항 본문).

- 다만, 장기계속계약(「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낙찰자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이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 장기계속계약에 대한 연차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상대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9항 단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게재

▪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한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의 개시일 전까지 부정당업자제재확인서를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동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공개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제12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7조제3항 및 별지 제15호서식).

- 업체(상호)명·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성명, 법인등록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사유
-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이 집행정지된 경우 그 집행정지 또는 집행정지의 해제사실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확인

참가자격의 확인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자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의 유무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확인을 한 결과 자격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서류의 제출자에게 통지하고 서류보완 등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2항).

2.2.2. 입찰참가자격 등록

입찰참가자격의 등록

참가자격의 등록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미리 경쟁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전단).

▪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는 등록된 종목에 한해 교부받은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3항).

등록사항의 게재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참가자격의 등록과 관련된 다음의 사항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게재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7항).

-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미리 등록할 수 있다는 뜻
- 등록에 필요한 서류
-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입찰참가 전에 미리 변경등록해야 한다는 뜻

등록사항의 게재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게재해야 합니다. 이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등록사항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도 등록한 것으로 봅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5항).

※ 다만,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관서의 경쟁입찰업무에만 활용하기 위해 경쟁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등록사항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게재하지 않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6항).

변경 등록

▪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변경된 때에는 입찰참가 전에 미리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후단 및 제7항제3호).

등록 면제 대상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경쟁입찰에 참가하려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 및 제16조(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서류의 확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1호).

- 다만, 이 경우에도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여부에 관한 확인은 받아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단서).

입찰참가자격의 등록 신청

제출서류

▪ 경쟁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제1호).

- 등록신청서
- 관련되는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증명하는 서류(필요한 경우에 한함)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신청을 받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 공무원은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공장등록증명서(제조등록의 경우에만 해당)
-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를 확인하는 서류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주민등록표 등본(개인의 경우만 해당)

※ 다만, 경쟁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가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사업자등록증의 경우에는 그 사본을 말함)를 첨부하도록 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3항 단서).

입찰참가자격등록증 교부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에게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교부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4항 및 별지 제1호서식).

2.3. 입찰 절차

2.3.1. 입찰공고 등

입찰공고

입찰공고 방법

▪ 입찰방법에 따라 경쟁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통하여 공고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1항 본문).

▪ 다만, 필요한 경우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이 병행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1항 단서).

입찰공고 시기

▪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경우

-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7일 전에 공고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2항 본문).

  √ 다만, 입찰참가자격을 사전에 심사하려는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현장설명일 전날부터 기산하여 30일 전에 공고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2항 단서).

▪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다음의 기간 전에 공고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3항).

  √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7일

  √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15일

  √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40일

▪ 긴급을 요하는 경우 및 재공고입찰의 경우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4항).

1. 재공고입찰의 경우
2. 국가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복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위의 3. 및 4.에 준하는 경우

▪ 정정공고의 경우

▹ 입찰공고 중 내용의 오류나 법령위반사항이 발견되어 공고사항의 정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남은 공고기간에 5일 이상을 더하여 공고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2항).

입찰공고의 내용

▪ 입찰공고에는 다음의 사항을 명시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찰 또는 개찰의 장소와 일시

▹ 현장설명의 장소·일시 및 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 입찰참가 등록 및 입찰 관련 서류에 관한 사항

▹ 입찰보증금과 국고 귀속에 관한 사항

▹ 낙찰자 결정방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일 및 낙찰자통보예정일 포함)

▹ 계약의 착수일 및 완료일

▹ 계약하려는 조건을 공시하는 장소

▹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교부장소 및 교부비용

▹ 추가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기관의 주소 등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고시한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 및 방법

▹ 우편입찰 등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입찰서를 송부할 주소

▹ 공동계약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공동계약이 가능하다는 뜻(「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공동계약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자격제한사항 포함)과 공동계약의 이행방식

▹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의 경우에는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 등에 관한 사항

- 입찰 관련 비리 또는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하여 계약의 목적이 되는 공사를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책정기준,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등의 기준 및 비율
- 그 밖에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입찰 관련 서류의 공개

입찰 서류의 작성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를 입찰에 부치려는 때에는 다음의 서류(이하 “입찰 관련 서류”라 함)를 작성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 본문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제1항).

- 설계서
-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

※ 다만,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 및 국가유산수리로서 국가유산청장이 정하는 공사 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교부하는 물량내역 기초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는 경우 포함)하게 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 단서 및 제42조제4항제1호·제2호).

-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 입찰유의서
- 입찰참가신청서 서식
- 입찰서 서식
- 공사도급표준계약서 서식
- 공사계약일반조건
- 공사계약특수조건
- 낙찰자 결정관련 심사기준(세부 심사기준 포함)
- 대형공사계약 및 기술제안입찰 등에 따른 계약의 경우 입찰안내서
- 그 밖에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입찰 관련 서류의 열람 및 교부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보안상 비밀유지가 필요한 경우 외에는 입찰관련서류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 본문).

※ 다만,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물량내역서를 작성하게 하는 경우에는 물량내역서를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 단서).

예외 : 입찰 통지

국가의 보안유지를 위한 경우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경쟁입찰참가통지서로 해당 입찰참가적격자에게 입찰공고 내용을 통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전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 및 별지 제2호서식).

▹ 이 경우 통지시기는 입찰공고 시기와 같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후단 및 제35조).

제한입찰 참가적격자에 대한 입찰참가 통지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지역 제한경쟁입찰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쟁입찰참가통지서로 해당 입찰참가적격자에게 입찰공고 내용을 통지하여 입찰공고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3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및 별지 제2호서식).

▹ 입찰참가통지는 현장설명일 7일 전(현장설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7일 전)까지 해야 합니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5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제2항).

지명입찰 참가적격자에 대한 입찰참가 통지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대상자를 지명하려는 때에는 경쟁입찰참가통지서로 각 입찰대상자에게 입찰공고 내용을 통지하고 입찰참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2항·제3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제30조 및 별지 제2호서식).

▹ 입찰참가통지는 현장설명일 7일 전(현장설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7일 전)까지 해야 합니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5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제2항).

2.3.2.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사전심사를 통한 적격자의 선정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미리 심사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적격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선정된 적격자에게 선정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

심사기준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의 난이도,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사회적 신인도 및 계약이행의 성실도 등 계약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데에 필요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기준을 정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2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절차

관련 서류의 열람 및 교부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입찰 전에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하며,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고 교부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4항 본문).

▹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세입의 원인이 되는 경쟁입찰의 경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관리·운영하는 온비드(OnBid) 전자자산처분시스템(www.onbid.co.kr)을 말함)에 이를 게재함으로써 열람 및 교부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4항 단서 및 「국유재산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처리장치 지정에 관한 고시」 제1조제1호].

1.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심사기준
2. 입찰참가자격의 사전심사에 필요한 증명서류의 작성 및 제출방법
3. 위의 1. 및 2.의 사항 외에 입찰참가자격의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

▪ 위에 따른 열람 및 교부 기간은 입찰공고일부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신청 마감일까지입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2제1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신청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신청은 입찰공고일부터 7일 이상이 지난날부터 하도록 해야 하며, 신청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하되, 입찰공고 시 그 신청기간을 명시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2제2항).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신청 서류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누락된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3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2제3항).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신청기간 또는 보완기간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입찰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여 그 결과를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2제4항).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신청한 자가 사전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일 3일 전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2제5항 전단).

▹ 이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재심사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2제5항 후단).

2.3.3. 현장설명

현장설명 실시

현장설명

▪ 공사입찰에서 공사의 성질·규모 등을 고려해 실제 공사현장에서 입찰참가자의 적정한 시공을 위한 현장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2제1항).

실시 시기

▪ 현장설명은 공사의 규모에 따라 해당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해 다음의 기간 전에 실시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2제3항 본문).

▹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 7일

-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 15일
-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 33일

▪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및 재공고입찰의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2제3항 단서 및 제35조제4항).

현장설명 참가자

참가자의 자격

▪ 현장설명에 참가하려는 자는 소정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기술자로 인정되고 있는 자여야 하며, 국가기술자격수첩 또는 건설기술자 경력수첩을 제시해야 합니다(「(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6조제1항 본문).

-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경미한 공사의 경우는 제외합니다(「(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6조제1항 단서).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받은 경우 사전심사 결과 입찰적격자로 통보받은 자에 한해 현장설명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12조).

2.3.4. 입찰참가 신청

입찰참가 신청

입찰참가 신청

▪ 입찰참가 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제1항).

제출서류

▪ 입찰참가 신청인은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날까지 다음의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1항 본문·제4항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3조제1항).

- 입찰참가신청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1통
- 해당 공사에 해당하는 면허수첩 또는 자격등록증 서류 1통

  ※ 이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의 사용인감)으로 날인(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경우는 서명)하여 제출해야 합니다(「(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3조제2항).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다만,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등록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공동계약이 허용된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3조제3항).
- 그 밖에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 입찰참가자격 등록자의 서류제출 면제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로써 위의 서류제출에 갈음하게 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1항 단서).

입찰참가신청증 교부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신청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입찰참가신청증을 교부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3항 본문 및 별지 제4호서식).

▹ 다만, 우편입찰의 경우나 그 밖에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신청증 교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3항 단서).

관계 법령 및 서류 등의 숙지

입찰서류 등의 숙지

▪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다음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1항).

▹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 공사입찰유의서

▹ 입찰참가신청서 서식

▹ 입찰서 서식

▹ 공사도급표준계약서 서식

▹ 공사계약일반조건

▹ 공사계약특수조건

▹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및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직접 물량내역서를 작성하게 하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 단서)에는 교부하지 않을 수 있음]

▹ 대형공사계약 및 기술제안입찰 등에 따른 공사의 경우 입찰안내서

▹ 낙찰자 결정관련 심사기준(세부심사기준을 포함)

▹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등에 따라 산정한 공사기간의 산정근거(대형공사계약 및 기술제안입찰 등에 따른 공사 계약은 제외)

▹ 그 밖에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위에 따른 입찰관련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그 밖에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날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5조제2항).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관한 규정의 숙지

▪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입찰공고 등에 기재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러한 내용을 숙지해야 합니다(「(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4조의2).

입찰대리인의 입찰참가

대리인의 입찰참가

▪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 개시시각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지정된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3항).

▪ 다만,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입찰대리인이 될 수 없습니다(「(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제4항).

법인의 경우 대리인 자격

▪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직원만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제3항 본문).

▹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제3항 단서).

▪ 임·직원 여부는 다음의 자료로 확인합니다(「(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제3항).

▹ 재직증명서

▹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그 밖에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3.5.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액

▪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입찰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날)까지 입찰참가신청서의 제출과 함께 입찰금액(단가입찰인 경우에는 그 단가에 총입찰예정량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발주기관에 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본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1항 본문·제2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제1항 본문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7조제1항).

▪ 다만,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2025. 7. 1. 부터 2025. 12. 31.까지는 입찰보증금을 입찰금액의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1항 단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제2조).

일괄보증의 경우

▪ 하나의 회계연도 내의 모든 공사입찰에 대하여 일괄입찰보증서로 입찰보증금을 납부할 수 있으며, 이를 희망하는 자는 매 회계연도 초 또는 최초의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까지 일괄입찰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제1항 단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4조 및 제25조).

▹ 일괄입찰보증서에는 일괄입찰보증금액, 보증기간, 피보증기관, 입찰참가자, 발급일자 및 보증기관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7조).

입찰보증금 납부

납부방식

▪ 입찰보증금은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포함. 이하 같음) 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 등으로 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①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 따른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함) 및 「은행법」에 따른 외국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2조에 따른 증권

③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④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

√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

√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제조합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공제조합

√ 「산업발전법」에 따른 공제조합

√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한국전기기술인협회(「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3조)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제조합

√ 「골재채취법」에 따른 공제조합

√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 「관광진흥법」에 따른 한국관광협회중앙회

√ 「방위사업법」 제43조에 따라 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지정받은 자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공제조합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산업공제조합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협회

√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공제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0조의2에 따른 콘텐츠공제조합

√ 「폐기물관리법」 제41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

√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4조에 따른 공간정보산업협회

√ 「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 따른 한국해양진흥공사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에 따른 조달기업공제조합

⑤ 위의 ①에 따른 금융기관 및 외국금융기관과 체신관서가 발행한 정기예금증서

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탁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⑦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

▪ 보증서 등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합니다(「(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7조제6항).

▹ 보증기간의 시작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 보증기간의 만료일: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 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다만, 대형공사 중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과 특정공사 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 날부터 90일 이후일 것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참가자에 대해서는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 또는 출자(법률에 따라 귀속시킨 경우 포함)한 법인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 및 그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포함),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어촌계·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골재채취법」 또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등의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를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현재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됩니다.

1.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의 주요 조건을 위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해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중인 경우를 포함함)

2.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에 명시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녹색기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녹색제품 등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거나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받은 자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그 밖에 경쟁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후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는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해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4항).

▹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는 입찰참가신청서에 따라 입찰참가신청을 하거나 입찰서를 제출하는 때에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제2항 및 별지 제3호서식).

입찰보증금의 반환

입찰보증금의 반환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납부된 입찰보증금의 보증목적이 달성된 때에는 계약자의 요청에 따라 즉시 반환하도록 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3조제1항).

▪ 낙찰되지 않은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즉시 반환됩니다(「(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7조제3항 본문).

▪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됩니다(「(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7조제3항 단서).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국고귀속

▪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 공사이행보증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 포함)에는 해당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전단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7조제2항).

▹ 낙찰자가 입찰보증금을 보증서 등으로 낸 경우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입찰보증금은 현금으로 징수되거나 정부소유 유가증권으로 전환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1항).

▪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한 경우에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낙찰자는 입찰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후단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2항).

2.3.6. 입찰서 등의 제출

입찰서 작성

입찰서 작성방법

▪ 입찰자는 입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9조제1항).

▹ 입찰서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해야 하고, 입찰금액은 원화로 해야 합니다(「(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9조제3항).

▹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해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를 함께 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을 따릅니다(「(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 본문).

√ 다만, 전산서식에 따른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해야 합니다(「(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 단서).

기명날인

▪ 기명날인은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서명 포함)으로 날인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항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9조제1항).

▪ 입찰서(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의 입찰의 경우는 산출내역서 포함)의 기재사항 중 삭제 또는 정정한 곳에도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해야 합니다(「(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9조제2항).

입찰서 제출

입찰서의 제출

▪ 경쟁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1인 1통의 입찰서를 제출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및 제2항).

▪ 입찰자는 입찰서를 제출할 때 청렴계약서를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0조의3).

입찰서 제출 장소

▪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1항 본문).

▹ 다만,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외에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고시한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1항 단서).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장소와 일시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2항).

▹ 국제입찰대상 계약인 경우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등 각 중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찰서 변경·취소 금지 등

▪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3항 본문).

▹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誤記)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찰서를 교환·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3항 단서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0조제4항 단서).

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

신용평가등급의 제출

▪ 입찰에 참여하려는 자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해당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해야 합니다(「(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0조의2제1항).

산출내역서 및 공종별 입찰금액 사유서 제출

입찰서류의 제출

▪ 공사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입찰 시 입찰서와 함께 산출내역서를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6항 본문).

▪ 다만,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와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의 경우에는 낙찰자로 결정된 후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는 때에 제출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6항 단서).

산출내역서 작성 방법

▪ 산출내역서는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적는 방법으로 작성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7항 본문).

▹ 다만,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물량내역서를 작성하게 하는 경우에는 직접 작성한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적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7항 단서).

2.4. 입찰의 성립 및 무효

2.4.1. 입찰의 성립 및 무효

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의 성립

▪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입찰의 연기

입찰의 연기

▪ 다음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현장설명 일시 및 입찰서 제출마감 일시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6조제1항).

▹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의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지정된 일시에 현장설명 또는 입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입찰공고의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해야 합니다(「(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6조제2항).

입찰 무효

입찰무효사유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제1항).

▹ 입찰참가의 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6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내에 있는 대표자를 통한 입찰

▹ 입찰보증금의 납부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고 한 입찰

▹ 입찰서가 그 도착일시까지 소정의 입찰장소에 도착하지 않은 입찰

▹ 동일사항에 동일인(1명이 수개의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해당 수개의 법인을 동일인으로 봄)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 내역입찰의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0조)

√ 입찰서 금액과 산출내역서의 총계금액이 일치하지 않은 입찰

※ 다만, 10원 미만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차상위 입찰자의 입찰금액이 10원 이상 높은 경우에 한해 유효한 입찰로 합니다. 이 경우 입찰서의 금액을 입찰금액으로 하며, 차상위자와 10원 미만의 차이가 있어 입찰무효가 될 때에는 상위금액 입찰자 중 입찰서의 금액과 산출내역서의 총계금액이 일치한 입찰자를 낙찰자로 합니다.

√ 산출내역서의 각 항목(각 공종,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별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총계금액과 일치하지 않은 입찰

※ 다만, 10원 미만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차상위 입찰자의 입찰금액이 10원 이상 높은 경우에 한하여 유효한 입찰로 합니다. 이 경우 입찰서의 금액을 입찰금액으로 하며, 차상위자와 10원 미만의 차이가 있어 입찰무효가 될 때에는 상위금액 입찰자 중 입찰서의 금액과 산출내역서의 총계금액이 일치한 입찰자를 낙찰자로 합니다.

√ 발주관서가 배부한 내역서의 공종별 목적물 물량 중 누락 또는 변경된 공종 혹은 수량에 대한 예정가격 조서의 금액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

√ 입찰서 금액, 산출내역서의 총계금액, 항목(각 공종,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별 금액을 정정하고 정정인을 누락한 입찰

√ 입찰자와 입찰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상의 입찰자 식별정보(사업자등록번호 등)가 일치하지 아니한 입찰

▹ 입찰참가자격 등록 사항 중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이나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고시한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른 방식에 따르지 않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 공동계약의 방법에 위반한 입찰

▹ 대안입찰의 경우 원안을 설계한 자 또는 원안을 감리한 자가 공동으로 참여한 입찰

▹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원안을 설계한 자 또는 원안을 감리한 자가 공동으로 참여한 입찰

▹ 그 밖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 입찰자(법인인 경우 대표자. 이하 같음)가 직접 입찰을 하지 않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할 경우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않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 포함)

√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 내역입찰에 있어서 타인의 산출내역서와 복사 등의 방법으로 동일하게 작성한 산출내역서가 첨부된 입찰(동일한 내용의 산출내역서를 제출한 자 모두 해당) 또는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장에서 무효입찰로 규정한 입찰

√ 내역입찰에 있어서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의 명의로 기명날인한 산출내역서가 첨부된 입찰

√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도급받아서는 안되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 「전기공사업법령」에 따라 대기업인 전기공사업자가 도급받아서는 안되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따라 대기업인 정보통신공사업자가 도급받아서는 안되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 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따른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다르게 작성·기재해 전산처리가 되지 않은 입찰

√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동일 입찰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입찰등록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않은 입찰,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를 위반한 입찰

▪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입찰자의 대표자 외의 구성원이 위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 대해서만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제2항).

입찰무효의 이유표시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을 무효로 하는 경우에는 무효 여부를 확인하는 데 장시간이 소요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개찰장소에서 개찰에 참가한 입찰자에게 이유를 명시하고 그 뜻을 알려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 본문).

▹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고시한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 입찰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표시한 절차와 방법으로 입찰자에게 입찰무효의 이유를 명시하고 그 뜻을 알려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 단서).

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재입찰

▪ 경쟁입찰에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입찰은 새로운 입찰로 보지 않으며, 입찰자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

재공고입찰

▪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

※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 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3항).

2.5. 낙찰자 결정

2.5.1. 낙찰절차

개찰

개찰방법

▪ 개찰은 입찰공고에 표시한 장소와 일시에 입찰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1항 본문).

▪ 입찰자가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이 개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1항 단서).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지정된 시간까지 입찰서를 접수한 후 입찰서의 접수마감을 선언하고, 입찰자의 참석 하에 입찰서를 개봉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제1항 본문).

▪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고시한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표시한 절차와 방법으로 입찰서의 접수를 마감하고 입찰서를 개봉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제1항 단서).

낙찰자 결정

낙찰자 결정 기준

▪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입찰자를 낙찰자로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 충분한 계약이행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 입찰공고나 입찰설명서에 명기된 평가기준에 따라 국가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
- 그 밖에 계약의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해 특별히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가장 적합하게 입찰한 자

▪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고, 이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둘 이상의 낙찰자를 결정한다는 취지를 입찰공고 또는 입찰통지에 명시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3).

- 물품이나 시설물의 특성상 둘 이상의 계약상대자가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공정성 및 정확성 제고를 위해 둘 이상의 계약상대자에게 평가·감정 등을 의뢰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예상하지 못한 계약 불이행 상황 발생 시 사회적 혼란이 우려되는 경우
- 국고금, 기금 및 국유재산(이하 “국고금등”이라 함) 운용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해 둘 이상의 계약상대자에게 국고금등을 예치 또는 대여하거나 관리·운용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경우
  - √ 계약의 효율적인 이행을 위해 둘 이상의 계약대상자가 동시에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 √ 긴급한 공급이 필요한 물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둘 이상의 계약대상자가 해당 물품의 조달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다만, 공사에 대한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비용의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해서는 안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1. 재료비·노무비·경비
2. 위 1.에 대한 부가가치세

낙찰자 결정

▪ 계약담당공무원은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해 지체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선정해야 합니다[「(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8조제2항 본문].

▹ 다만,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거나 각 입찰자의 입찰가격과 공사수행능력, 사회적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8조제2항 단서).

▪ 낙찰자는 입찰 무효 사유가 없는 자로서 낙찰자 결정 기준에 적합한 자로 선정합니다(「(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8조제1항).

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

▪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른 공사의 입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산점수가 동점인 상위 2인을 말함)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구분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1항제2호 및 제5호).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계약이행능력 및 일자리창출 실적 등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계약이행능력 및 일자리창출 실적 등 심사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공사수행능력과 사회적 책임의 합산점수가 높은 자로 결정하되, 해당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공사의 규모·특성 등을 반영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입찰자 중 출석하지 않은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않은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이 이를 대신하여 추첨하게 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2항).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

▪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부적격자를 제외하고도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8조제6항).

낙찰선언

낙찰선언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출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낙찰선언을 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 본문).

▹ 다만,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 계약이행능력 및 일자리창출 실적 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거나 각 입찰자의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및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때에는 그 절차를 거친 후 낙찰선언을 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 단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고시한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 입찰서를 제출하는 방식의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표시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개찰 및 낙찰선언을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3항).

2.5.2. 적격심사

적격심사

적격심사의 대상

▪ 적격심사의 대상은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이며,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의 공사는 종합심사의 대상이 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 및 제4항제1호 참조).

낙찰자 결정 방법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해당 계약이행능력 및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일자리창출 실적 등을 심사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

※ 낙찰자 결정시의 계약이행능력 심사를 "적격심사"라고 합니다(「(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1조 참조).

▪ 낙찰자 결정 방법의 공고

▹ 적격심사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낙찰자 결정 방법, 적격심사기준 열람에 관한 사항, 심사에 필요한 서류, 제출기한 및 낙찰자통보 예정일 등이 입찰공고 시 함께 공고됩니다(「(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2조).

계약이행능력 심사

▪ 계약이행능력심사는 해당 입찰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과거 계약이행 성실도,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하도급관리 계획·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계약질서의 준수정도, 과거 공사의 품질정도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별표에 따라 적격여부를 심사해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5항 본문,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5조제1항 및 별표).

▹ 다만, 공사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직접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5항 단서).

심사항목별 심사기준일

▪ 심사항목별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합니다(「(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5조제5항).

적격심사 방법

심사 절차

▪ 예정가격 이하의 최저가입찰자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4조제1항).

▪ 제출된 적격심사 서류는 그 제출마감일 또는 보완일부터 7일 이내에 심사합니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7조제2항).

※ 위에도 불구하고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2025. 7. 1.부터 2025. 12. 31.까지는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공사계약에 대해서는 심사서류의 제출마감일 또는 보완일로부터 4일 이내에 심사해야 합니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2일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7조제5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제2조).

세부심사기준

▪ 세부심사기준은 적격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작성되며, 공사의 경우 교량, 터널, 지하철, 전기, 정보통신 등 각 공사 종류별로 그 공사의 특성·목적 및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별표의 분야별 배점한도(입찰가격 제외)를 20% 범위에서

가감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항목별(신인도 제외) 세부사항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습니다(「(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6조 및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2조제1항).

-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 1
-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 2
-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평가기준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 3
-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 4
- 추정가격 2억원 미만(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인 공사의 평가기준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 5

▪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에 대한 심사는 다음과 같은 심사기준에 따르되,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의 시공능력공시액, 실적, 기술보유상황 등의 보완을 위해 공동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우대하여 세부심사기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7조제3항).

- 시공경험·기술능력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시공경험 및 기술능력에 공사참여 지분율(이하 “시공비율”이라 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해 산정
- 경영상태·신인도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해 이를 합산

▪ 공사의 성질·규모에 따라 입찰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대한 해당 공사수행능력 심사방법을 세부심사기준에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7조제4항).

낙찰자 결정

▪ 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합니다(「(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8조제1항).

▪ 최저가 입찰자의 종합평점이 낙찰자로 결정될 수 있는 점수 미만일 때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낙찰자 결정에 필요한 점수 이상이 되면 낙찰자로 결정합니다(「(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8조제2항).

재심사

▪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가 통보일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결과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요청서 접수일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를 합니다(「(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9조제1항).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의 처리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경우의 처리

▪ 제출된 적격심사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10조제1항).

-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 : 적격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 취소
-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 : 해당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 위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해야 합니다(「(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10조제2항).

> ※ 그 밖에 적격심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에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2.5.3. 종합심사낙찰제

종합심사낙찰제

종합심사낙찰제의 대상

▪ 종합심사낙찰제의 대상은 ①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와 ② 국가유산수리로서 국가유산청장이 정하는 공사, ③ 건설사업관리 용역으로서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용역, ④ 건설공사기본계획 용역 또는 기본설계 용역으로서 추정가격이 30억원 이상인 용역 그리고 ⑤ 실시설계 용역으로 추정가격이 40억원 이상인 용역입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

종합심사 방법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종합 심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입찰자의 계약이행실적, 인력배치계획, 사회적 책임 이행 노력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따라 세부심사기준을 정하고, 입찰 전에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그 기준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6항).

결격사유 등

▪ 입찰자가 부도, 파산, 해산, 부정당업자 제재, 영업정지(건설업 등의 등록말소·취소 포함), 입찰무효 등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15조제1항).

▹ 부도 및 파산의 경우로서 법원으로부터 기업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고 정상적인 금융거래의 재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보지 않습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15조제3항).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한 경우로서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에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하고 잔존 구성원의 시공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거나 결격사유가 발생한 구성원을 대신할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도록 하여 재심사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15조제2항 본문).

▹ 다만,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수급체 전체를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15조제2항 단서).

입찰서 등의 제출

제출서류

▪ 입찰자는 입찰 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7조).

▹ 입찰서

▹ 산출내역서 작성방법에 따른 산출내역서

▹ 하도급계획서 작성방법에 따른 하도급계획서(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종합심사점수가 최고점인 자에 한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음)

▹ 심사를 위해 입찰공고에서 발주기관이 요구한 자료(다만, 배치기술자 심사관련 서류의 제출일은 최초의 종합 심사서류 제출요구일부터 15일 이후로서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지정한 날까지 제출해야 함)

▹ 물량 및 시공계획 심사를 위해 발주기관이 요구한 자료(고난이도 공사에 한하여 제출)

▹ 물량산출근거 작성방법에 따른 입찰자의 물량산출근거 및 시공계획서 작성방법에 따른 시공계획서(물량·시공계획 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한하여 선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출)

제출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경우의 처리

▪ 제출된 서류가 위조, 변조,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16조제1항).

-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 :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 통보의 취소
-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 : 해당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 제출된 서류가 위조, 변조,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16조제2항).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심사기준

▪ 종합심사낙찰제는 공사의 규모 및 난이도에 따라 다음의 심사기준에 따라 실시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3조제1항).

- 발주기관이 물량·시공계획을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고난이도 공사(이하 “고난이도 공사”라고 함): 「(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별표 1-2,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의 공사 중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이면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공사(이하 “일반공사”라고 함): 「(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별표 1-1,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의 공사 중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이면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공사(이하 “간이형 공사”라고 함): 「(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별표 1-3,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

▪ 국가유산수리로서 국가유산청장이 정하는 공사는 국가유산청장이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절차 및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3조제2항).

종합심사 점수 산정

▪ 간이형 공사는 공사수행능력점수(경영상태점수 포함), 사회적 책임점수(공사수행능력점수의 배점한도 내에서 가산), 입찰금액점수(단가 심사점수 및 하도급 계획 심사점수 포함) 및 계약신뢰도 점수를 합산하여 종합심사 점수를 산정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10조제1항).

▪ 일반공사는 공사수행능력점수, 사회적 책임점수(공사수행능력점수의 배점한도 내에서 가산), 입찰금액점수(단가 심사점수 및 하도급 계획 심사점수 포함) 및 계약신뢰도 점수를 합산하여 종합심사 점수를 산정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10조제2항).

▪ 고난이도 공사는 공사수행능력점수, 사회적 책임점수(공사수행능력점수의 배점한도 내에서 가산), 입찰금액점수(단가 심사점수, 하도급계획 심사점수, 물량심사점수 및 시공계획 심사점수 포함) 및 계약신뢰도 점수를 합산하여 종합심사 점수를 산정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10조제3항).

물량 및 시공계획 심사

▪ 고난이도 공사에 대하여 종합심사 점수를 산정한 후 물량·시공계획 점수를 제외한 점수가 최고점 순으로 입찰공고에서 정하는 일정한 수의 업체를 우선순위 물량심사 및 시공계획심사 대상자로 선정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11조).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위에 따라 우선순위 물량·시공계획의 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한하여 물량 및

시공계획을 심사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12조제1항).

▪ 물량심사는 세부공종별로 물량의 적정성을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할 세부공종을 다음과 같이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사할 세부공종을 정할 경우 1.은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12조제2항).

1. 해당 공사의 규모 및 중요도 등에 따라 물량심사 대상으로 입찰공고에 명시한 세부공종
2. 동일한 세부공종에서 발주기관이 작성한 추정물량, 심사대상자가 작성한 입찰물량 및 다른 입찰참가자가 작성한 입찰물량 상호간 격차가 큰 세부공종
3. 그 밖에 입찰공고에 명시한 기준에 해당하는 세부공종

낙찰자 결정 방법

▪ 종합심사낙찰제는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입찰자 중 각 입찰자의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및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 심사하여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 및 「(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13조제1항 본문).

▹ 다만, 고난이도 공사의 경우에는 우선순위 물량·시공계획 심사대상자 중 1인 이상이 「(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10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종합심사 점수가 차순위 물량·시공계획 심사대상자의 「(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1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종합심사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의 물량·시공계획 심사 없이도 우선순위 물량·시공계획 심사대상자를 대상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13조제1항 단서).

▪ 종합심사 점수가 최고점인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13조제2항).

1. 공사수행능력점수와 사회적 책임점수의 합산점수(사회적 책임점수는 공사수행능력점수의 배점한도 내에서 가산)가 높은 자
2. 입찰금액이 균형가격에 근접한 자, 다만, 균형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8 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금액이 낮은 자
3. 공사수행능력점수가 높은 자
4. 사회적책임점수가 높은 자
5.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종합심사낙찰제로 낙찰받은 계약금액(공동수급체로 낙찰받은 경우에는 전체 공사부분에 대한 지분율을 적용한 금액)이 적은 자
6. 추첨

▪ 위에도 불구하고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13조제3항).

1. 재료비·노무비·경비
2. 위 1.에 대한 부가가치세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를 결정한 경우 해당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해야 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13조제4항).

고난이도 공사의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의 제한

▪ 고난이도 공사(발주기관이 물량내역수정을 허용한 공종에 한함)에 대하여는 물량내역서의 누락사항이나 오류 등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습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18조).

> ※ 그 밖에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6. 대형공사계약

2.6.1. 대형공사계약 개관

"대형공사"·"특정공사"란?

대형공사

▪ "대형공사"란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신규복합공종공사를 말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1호).

특정공사

▪ "특정공사"란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300억원 미만인 신규복합공종공사 중 각 중앙관서의 장이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로 집행함이 유리하다고 인정하는 공사를 말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2호).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

규정조항

▪ 대형공사계약 중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에 따른 계약과 특정공사의 계약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장에 따르고, 여기에 없는 사항에 관하여는 제6장 외의 다른 장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 대상 공사의 공고

▪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형공사 등의 집행기본계획서에 대하여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때에는 심의결과에 따라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의 방법으로 집행할 대형공사 등을 신문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공고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제3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1조).

▸ 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형공사 등에 있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고된 입찰방법과 그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에 따라 입찰을 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제5항).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의 입찰참가자격

입찰참가자격

▪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 한해 참가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제1항 본문).

1. 해당 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일 것
2.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자일 것

▪ 다만, 위의 요건 중 어느 하나만을 갖춘 자들이 공동으로 위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제1항 단서).

▪ 대안입찰에서 대안을 제출하지 않고 원안에 따른 입찰을 하는 자는 위 1.의 요건만을 갖추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제2항).

설계비 보상

설계비 보상 대상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전부 또는 일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설계비의 일부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제1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2항 및 제87조에 따라 선정된 자 중 낙찰자로 결정되지 않은 자

▸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취소된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에 참여한 자

대안입찰의 설계비 보상기준

▪ 설계보상비는 다음과 같이 지급합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87조제1항).

▸ 낙찰탈락자가 5명인 경우 :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설계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20분의 7, 20분의 5, 20분의 4, 20분의 2, 20분의 2를 지급

▸ 낙찰탈락자가 4명인 경우 :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설계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20분의 7, 20분의 5, 20분의 4, 20분의 2를 지급

▸ 낙찰탈락자가 3명인 경우 :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설계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20분의 7, 20분의 5, 20분의 4를 지급

▸ 낙찰탈락자가 2명인 경우 :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설계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20분의 7, 20분의 5를 지급

▸ 낙찰탈락자가 1명인 경우 :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의 1/4를 지급

일괄입찰의 설계비 보상기준

▪ 낙찰탈락자 중 설계점수가 입찰공고에 명시한 일정점수를 초과하는 자(이하 "보상대상자"라 함)에 대하여 낙찰자를 결정한 때 다음의 산식에 따라 설계보상비를 지급합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87조의2제1항).

2% x (설계점수 / 보상대상자 점수합계)

▪ 위에도 불구하고 낙찰탈락자 중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한 때 아래 1.에 따른 설계보상비를 지급하며, 낙찰자를 결정한 때 아래 2.와 1.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합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87조의2제2항 본문).

▸ 다만,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된 자가 낙찰자로 결정되지 않은 때는 아래 2.와 1.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습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87조의2제2항 단서).

1. 2% x [설계점수/(보상대상자점수합계+실시설계적격자설계점수)]

2. 2% x (설계점수/보상대상자점수합계)

▪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취소된 대안입찰, 일괄입찰 및 기술제안입찰에 참여한 자(예비계약을 체결한 자는 제외) 중 보상대상자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위의 계산식에 따라 설계보상비를 지급합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85조제2호 및 제87조의2제3항).

▪ 보상대상자 1인에게 공사예산에서 다음의 요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여 설계보상비를 지급해서는 안됩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87조의2제4항).

▸ 토목의 경우 실시설계적격자 결정일의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의 기본설계 요율

▸ 건축의 경우 실시설계적격자 결정일의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 기준」의 건축설계 대가요율 각 종별 중급의 40/100

▪ 낙찰자가 선정되기 전에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입찰이 취소된 경우에는 모든 입찰참여자에 대해 해당 공사의 설계보상비로 책정된 해당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균분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입찰참여 1인당 동 금액의 1/4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못합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87조의2제5항 및 제87조제3항).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

계약금액의 조정

▪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에 대한 설계변경으로 대형공사의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1조제1항).

▪ 다만,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1조제1항).

계약금액의 조정기준

▪ 계약금액을 조정하려는 때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릅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1조제3항).

1. 감소된 공사량의 단가 :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
2.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 :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의 범위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다만,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산출내역서상의 단가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함
3. 위의 1.에 따른 산출내역서상의 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 :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

2.6.2. 일괄입찰

일괄입찰

"일괄입찰"이란 ?

▪ “일괄입찰[일명 턴키(Turnkey)라고 함]”이란 정부가 제시하는 공사일괄입찰기본계획 및 지침에 따라 입찰 시에 그 공사의 설계서 그 밖에 시공에 필요한 도면 및 서류(이하 “도서”라 함)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설계·시공일괄입찰을 말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5호).

실시설계적격자의 결정방법

▪ 일괄입찰은 기본설계입찰을 실시해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자에 한해 실시설계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제1항).

▪ 실시설계적격자의 결정방법은 입찰공고에 명시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의2제3항).

기본설계입찰 및 실시설계적격자 결정

기본설계입찰

▪ 기본설계입찰은 공사 일괄입찰의 기본계획 및 지침에 따라 실시설계에 앞서 기본설계와 그에 따른 도서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입찰을 말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6호).

▪ 기본설계입찰자는 다음의 도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제3항제1호).

- 기본설계입찰서
- 기본설계에 대한 설명서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관계서류
- 그 밖에 공고로 요구한 사항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기본설계입찰서를 제출받은 경우 또는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그 입찰자의 기본설계입찰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해당 설계의 적격 여부에 대한 심의 및 설계점수평가를 의뢰하여 설계의 적격 여부를 명백히 한 서류(원안입찰의 경우 제외) 및 설계점수를 통지받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제5항제2호 및 제3호).

> ※ 법령용어해설
>
> · 입찰안내서 : “입찰안내서”란 대안입찰, 일괄입찰, 기본설계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해당공사의 입찰에 참가하기 전에 숙지해야 하는 공사의 범위·규모, 설계·시공기준, 품질 및 공정관리, 그 밖에 입찰 또는 계약이행에 관한 기본계획 및 지침 등을 포함한 문서를 말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7호).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대상자

▪ 기본설계입찰에 있어서 적격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입찰자 중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대 6인(적격으로 통지된 입찰자가 6인 미만인 경우에는 적격으로 통지된 모든 입찰자)을 선정한 후 아래에 따라 선택된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방법을 적용해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제1항 본문).

- 다만, 기본설계적격자가 1인 이하인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을 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제1항 단서).

실시설계적격자 결정 방법

▪ 기본설계입찰자로 선정된 자를 대상으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공사의 목적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 해당 공사에 가장 적합하다고 심의한 방법으로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의2제1항).

- 설계점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제1항제2호의 자가 입찰무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점한 점수를 말함)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기준을 초과한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는 방법

- 입찰가격을 설계점수로 나누어 조정된 수치가 가장 낮은 자 또는 설계점수를 입찰가격으로 나누어 조정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는 방법
- 설계점수와 가격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각각 평가한 결과를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는 방법
- 계약금액을 확정하고 기본설계서만 제출하도록 한 경우 설계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는 방법

※ 이 경우에는 기본설계입찰 시 입찰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의2제4항).

※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된 입찰자의 입찰금액이 계속비대형공사(공사비가 계속비예산으로 계상된 대형공사)에 있어서는 계속비예산, 일반대형공사(공사비가 계속비예산으로 계상되지 않은 대형공사)에 있어서는 총공사예산을 각각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로 가격을 조정하기 위해 입찰자와 협의해야 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을 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9호·제10호 및 제87조제3항).

낙찰자 결정

제출서류

- 실시설계적격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도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제3항제2호).
  - 실시설계서[기본계획 및 지침과 기본설계에 따라 세부적으로 작성한 시공에 필요한 설계서(설계서에 부수되는 도서 포함)]
  - 실시설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관계 서류
  - 단가 및 수량을 명백히 한 산출내역서
  - 그 밖에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심의 및 평가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실시설계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해당 설계의 적격 여부에 대한 심의 및 설계점수평가를 의뢰해 설계의 적격여부를 명백히 한 서류(원안입찰의 경우 제외) 및 설계점수를 통지받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제5항).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위의 설계심의에 대하여 기술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제6항).

낙찰자 결정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로부터 해당 실시설계의 적격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실시설계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제2항).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를 결정할 때 공사의 시급성, 그 밖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적격자에게 해당 공사를 공정별 우선순위에 따라 구분하여 실시설계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으며, 해당 실시설계서에 대해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로부터 실시설계적격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실시설계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제5항).

▸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총공사와 실시설계적격통지를 받은 공사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 이에 따라 계약을 체결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제6항).

√ 총공사에 대한 최종 실시설계적격통지가 있는 때에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산출내역서를 다시 작성하여 당초의 산출내역서와 대체합니다. 이 경우 당초의 계약금액은 증액할 수 없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제7항).

※ 실시설계서를 우선 제출해야 하는 공종의 범위 및 제출기한, 산출내역서의 작성·제출에 관한 사항 등이 입찰안내서 등에 명시되며,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입찰 전에 이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제8항).

낙찰자 결정 기한

▪ 일괄입찰의 낙찰자의 결정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실시설계서가 제출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제4항).

실시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 일괄입찰의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 실시설계적격자에게 책임이 없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실시설계를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즉시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1조제2항).

▸ 민원이나 환경·교통영향평가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조건 등과 관련해 실시설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서·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명시 또는 반영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 해당 발주기관이 변경을 요구한 경우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가 실시설계 심의과정에서 변경을 요구한 경우

> ※ 그 밖에 일괄입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계약예규)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6.3. 대안입찰

대안입찰

"대안입찰"이란 ?

▪ “대안입찰”이란 원안입찰과 함께 따로 입찰자의 의사에 따라 대안이 허용된 공사의 입찰을 말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4호).

▪ 대안입찰에서는 원안입찰자와 채택된 대안을 제출한 자 중에서 낙찰자가 결정되며, 이러한 낙찰자 결정방법은 입찰공고에 명시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의2제3항).

> ※ 법령용어해설
>
> · 대안 : “대안”이란 정부가 작성한 실시설계서상의 공종 중에서 대체가 가능한 공종에 대하여 기본방침의 변동

없이 정부가 작성한 설계에 대체될 수 있는 동등이상의 기능 및 효과를 가진 신공법·신기술·공기단축 등이 반영된 설계로서 해당 실시설계서상의 가격이 정부가 작성한 실시설계서상의 가격보다 낮고 공사 기간이 정부가 작성한 실시설계서상의 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방법(공기단축의 경우에는 공사기간이 정부가 작성한 실시설계서상의 기간보다 단축된 것에 한함)으로 시공할 수 있는 설계를 말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3호).

· 실시설계서 : "실시설계서"란 기본계획 및 지침과 기본설계에 따라 세부적으로 작성한 시공에 필요한 설계서(설계서에 부수되는 도서 포함)를 말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8호).

대안제출

제출서류

▪ 대안입찰자가 원안입찰과 함께 대안을 제출하는 경우 다음의 도면 및 서류(이하 "도서"라 함)를 제출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제2항 본문).

- 입찰서
- 대안설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관계서류
- 원안입찰 및 대안입찰에 대한 단가와 수량을 명백히 한 산출내역서
- 대안의 채택에 따른 이점 그 밖에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 동시에 2개 이상의 대안을 제출할 수 없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제2항 단서).

대안채택

낙찰적격입찰

▪ 제출된 대안입찰서의 대안입찰가격(조정을 거친 후의 대안입찰가격 포함)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낙찰적격입찰로 선정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 대안입찰가격이 입찰자 자신의 원안입찰가격보다 낮을 것
- 대안입찰가격이 총공사 예정가격 이하로서 대안공종(代案工種)에 대한 입찰가격이 대안공종에 대한 예정가격 이하일 것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원안설계서와 낙찰적격입찰의 대안입찰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해당 설계의 적격 여부에 대한 심의 및 설계점수평가를 의뢰하여, 설계의 적격 여부를 명백히 한 서류(원안입찰의 경우 제외) 및 설계점수를 통지 받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제5항).

낙찰자 결정대상자 선정

▪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낙찰자 결정대상자로 선정합니다(「(계약예규)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제16조).

1. 원안입찰자(대안입찰서를 제출하였으나 낙찰적격입찰에서 제외되었거나, 낙찰적격입찰 중 2.에 포함되지 않은 입찰자 포함)
2.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로부터 적격으로 통지된(설계적합최저가방식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60점 이상 85점 이하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설계점수 이상을 받은) 대안입찰서 중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대 6개의 대안(적격으로 통지된 대안이 6개 미만인 경우에는 적격으로 통지된 모든 대안)을 선정한 후, 선정된 대안의 설계점수와 원안설계점수를 비교하여 대안설계점수가 원안설계점수보다 낮지 아니한 대안입찰서를 제출한 자

대안채택

▪ 적격으로 통지된 대안입찰서 중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대 6개의 대안(적격으로 통지된 대안이 6개 미만인 경우에는 적격으로 통지된 모든 대안)을 선정한 후 대안설계점수가 원안설계점수보다 높은 것을 대안으로 채택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2항 본문).

▹ 다만, 수개의 대안공종 중 대안의 일부 공종에 대한 대안설계점수가 원안설계점수보다 낮은 경우에는 해당 대안공종은 채택하지 않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2항 단서).

▹ 대안으로 채택되지 않은 공종이 있는 경우에는 대안입찰자의 대안입찰서상 해당 공종의 입찰가격을 원안입찰시에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해당 공종의 입찰가격으로 대체하여 전체 대안입찰가격을 조정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3항).

▹ 위에 따른 조정을 거친 후 대안으로 채택되지 않은 공종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채택된 공종에 대한 설계의 일부를 수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의 일부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4항 본문).

√ 다만, 수정하게 되는 공종의 입찰가격은 증액할 수 없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4항 단서).

낙찰자 결정

낙찰자 결정 방법

▪ 원안입찰자와 채택된 대안을 제출한 자를 대상으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공사의 목적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 해당 공사에 가장 적합하다고 심의한 방법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의2제2항 및 제86조제5항).

▹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법

▹ 입찰가격을 설계점수로 나누어 조정된 수치가 가장 낮은 자 또는 설계점수를 입찰가격으로 나누어 조정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법

▹ 설계점수와 가격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각각 평가한 결과를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법

대안을 제출한 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 대안을 제출한 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원안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인 입찰을 제출한 자부터 순차적으로 다음의 방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6항).

▹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 : 각 입찰자의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및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

▹ 그 밖의 공사 : 계약이행능력 및 일자리창출 실적 등을 심사해 낙찰자를 결정

낙찰자 결정 기한

▪ 대안입찰의 낙찰자 결정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일부터 8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7항).

※ 그 밖에 대안입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계약예규)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있습니다.

3. 수의계약

3.1. 수의계약 개관

3.1.1. 수의계약 대상

수의계약

수의계약의 체결

▪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단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

수의계약체결의 요건

▪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5호).

1.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경쟁에 부쳐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

   가. 천재지변,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작전상의 병력 이동, 긴급한 행사,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 원자재의 가격급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군시설물의 관리, 외교관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보안상 필요가 있거나,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한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

   가. 공사와 관련해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 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나. 작업상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는 등 동일 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다. 마감공사와 관련하여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라. 접적지역 등 특수지역에서 시행하는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마. 특허공법을 적용하는 공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신기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신기술이나 검증받은 기술, 종전의 「전력기술관리법」(법률 제137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6조의2에 따라 지정·고시된 새로운 전력기술 또는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재난안전신기술(각 해당 법률에 따라 지정된 보호기간 또는 유효기간 내의 경우로 한정함)을 적용하는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3. 건설공사(전문공사는 제외)로서 추정가격이 4억원 이하인 공사,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공사, 그 밖의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 6천만원 이하인 공사

4. 경쟁입찰을 실시한 결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

   가. 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재공고입찰을 실시하더라도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가 1인밖에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2025. 7. 1.부터 2025. 12. 31.까지는 경쟁입찰을 실시했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재공고입찰을 실시하지 않더라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3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제2조).

나.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5.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가.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 그 낙찰금액보다 불리하지 않은 금액의 범위에서 수의계약으로 하는 경우

나. 낙찰자가 계약체결 후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다. 계약이행에 착수한 후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 위의 4, 5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또는 낙찰금액을 분할해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그 가격 또는 금액보다 불리하지 않은 금액의 범위에서 수인에게 분할해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 법령용어해설

· 추정가격: “추정가격”이란 물품·공사·용역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국제입찰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해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된 가격을 말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

· 예정가격: “예정가격”이란 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해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해 미리 해당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따라 작성해 두는 가격을 말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1항 본문 참조).

※ 예정가격 작성 및 계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1.2. 수의계약대상자의 자격

수의계약대상자 자격

자격요건

▪ 수의계약대상자도 입찰참가자격과 같은 자격요건을 갖춰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제32조).

< 입찰참가자격 요건 >

· 다음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1.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받았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2. 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을 것

3.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을 것

· 위의 1. 및 2.의 요건은 관계 기관(법령에 따라 설립된 관련 협회 등 단체 포함)에서 발행한 문서로, 3.의 요건은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확인하는 서류의 사본으로 각각 증명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2항 및 제37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

▪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3항 본문).

▹ 다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외에는 적합한 시공자가 존재하지 않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3항 단서).

3.2. 견적서 제출

3.2.1. 2인 이상의 견적서 제출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의 체결방법

▪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 본문).

▹ 다만, 일정한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 단서 참조).

※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국가공사계약자』의 <수의계약-견적서 제출-1인 견적서 제출 가능>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해야 하는 수의계약

소액수의계약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중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해 견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항 본문 및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제6항제1호).

1. 건설공사(전문공사 제외)로서 추정가격이 4억원 이하인 공사

2.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공사

3. 그 밖의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 6천만원 이하인 공사

※ 추정가격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계약의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액수의계약체결 절차에 따를 수

있습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4).

▪ 위의 경우라도 계약의 목적이나 특성상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따른 견적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항 단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3호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제1항).

▹ 기존 시설물을 계속적으로 유지·보수하는 경우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해 견적서를 제출받는 경우 호환이 되지 않는 등 사실상 유지·보수가 곤란하거나 예산낭비가 우려되는 경우

▹ 재안내공고를 실시한 결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지 못한 경우, 그 밖에 계약의 목적이나 특성상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따라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실상 계약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소액수의계약 체결절차

안내공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 그 견적서의 제출에 관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안내공고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3항).

▪ 재안내공고

▹ 안내공고에도 불구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재안내공고를 해야 합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제2항).

√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견적서 제출자가 2인 미만인 경우

√ 예정가격 이하로서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공사의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없는 경우(다만, 예정가격과 견적금액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제1항제1호)

√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1인 이하인 경우 등 계약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다만, 재안내 공고를 실시하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인 밖에 없을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는 제외)

▪ 지역제한 가능

▹ 소액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이행의 용이성 및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견적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를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기준으로 하여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안내공고에 그 제한사항과 제한기준이 명시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4항).

√ 위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해당 공사의 현장 등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로 제한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제2항 본문).

√ 다만, 공사의 현장 등이 소재하는 시(행정시 포함)·군(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을 말함)에 해당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시·군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제2항 단서).

견적서 제출

▪ 소액수의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견적금액을 적은 견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제4항).

- 이는 입찰의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이며, 이때 제출된 입찰서는 견적서로 봅니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 제22조제3항).

소액수의계약의 계약자 결정

계약자의 결정

- 예정가격을 결정한 경우에는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공사의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자로 결정합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제1항제1호 본문).

  - 다만, 예정가격과 견적금액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제1항제1호 단서).

- 위에 따라 계약자로 선정된 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계약자로 결정합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제2항).

  - 견적서 제출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 견적서 제출마감일 현재 공사 관련 법령에 정한 기술자 보유 현황이 해당 공사 시공에 필요한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부실시공, 담합행위, 입찰 및 계약서류 위조 또는 허위제출, 입·낙찰 또는 계약이행 관련 뇌물제공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계약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경쟁입찰의 입찰무효 사유에 준하는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그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비교 가능한 2개 이상의 견적서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
  - 계약자로 결정된 자가 스스로 계약체결을 포기한 경우로서 포기한 자를 제외하고 비교 가능한 2개 이상의 견적서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
  -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계약금액의 결정

- 제출받은 견적서에 기재된 견적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작성을 생략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등 계약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아 계약금액을 결정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6항).

산출내역서 제출

- 계약자로 결정된 자는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는 때까지 제출해야 합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제4항).

3.2.2.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로 할 수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시 예외

▪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하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따를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 단서).

▹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한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

√ 공사와 관련하여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 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 작업상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는 등 동일 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 마감공사와 관련하여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 접적지역 등 특수지역에서 시행하는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 특허공법을 적용하는 공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신기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신기술이나 검증받은 기술, 종전의 「전력기술관리법」(법률 제137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6조의2에 따라 지정·고시된 새로운 전력기술 또는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재난안전신기술(각 해당 법률에 따라 지정된 보호기간 또는 유효기간 내의 경우로 한정함)을 적용하는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마목)

▹ 경쟁입찰을 실시한 결과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

√ 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재공고입찰을 실시하더라도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가 1인밖에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 그 낙찰금액보다 불리하지 않은 금액의 범위에서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 낙찰자가 계약체결 후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 계약이행에 착수한 후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다만, 여성기업, 장애인 기업 또는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또는 마을기업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

▹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았으나 견적서 제출자가 1인 뿐인 경우로서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인밖에 없을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계속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시의 계약금액

계약금액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해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공사(이하 “계속공사”라 함)에서 해당 공사 이후의 계약금액은 예정가격에 제1차 공사의 낙찰률(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곱한 금액 이하로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제31조 본문).

- 공사와 관련해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 작업상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는 등 동일 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 마감공사에 있어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낙찰률 적용의 예외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제1차 공사의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다음에 따릅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단서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조제2항).

- 제1차 공사의 낙찰율이 100분의 87.75 미만인 경우로서 계속공사의 추정가격이 10억원(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국가유산공사 등은 3억원) 미만인 공사 : 해당 예정가격에 100분의 87.75를 곱한 금액
- 제1차 공사의 낙찰율이 100분의 86.75 미만인 경우로서 계속공사의 추정가격이 50억원 미만 10억원(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국가유산공사 등은 3억원) 이상인 공사 : 해당 예정가격에 100분의 86.75를 곱한 금액
- 제1차 공사의 낙찰율이 100분의 85.5 미만인 경우로서 계속공사의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 : 해당 예정가격에 100분의 85.5를 곱한 금액

재공고입찰에서도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등의 수의계약 시 계약금액

재공고입찰 시 조건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 및 제2항 본문).

- 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재공고입찰을 실시하더라도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가 1인밖에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 √ 이 경우 국가에 가장 유리한 가격을 제시한 자를 계약자로 결정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

▪ 다만, 제79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일괄입찰 또는 제98조제3호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 경쟁입찰을 한 후 물가변동으로 인해 각 중앙관서의 장이 해당 공사의 총사업비를 조정한 경우에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2항 단서).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의 수의계약 시 계약금액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그 낙찰금액보다 불리하지 않은 금액의 범위에서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1항).

▪ 다만,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 및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1항 단서).

4. 계약의 체결

4.1. 계약의 성립

4.1.1. 계약체결

계약의 체결

계약의 체결

▪ 낙찰자는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9조제1항 본문).

▹ 다만, 태풍·홍수·그 밖의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그 밖에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해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위의 계약체결 기한에 산입하지 않습니다(「(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9조제1항 단서 및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2조제1항).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표준계약서에 따르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따로 이와 다른 양식의 계약서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9조제3항).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표준계약서에 기재된 계약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에 필요한 공사계약특수조건을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9조제2항).

※ 공사계약특수조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사 관계 법령 및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라 계약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조제4항).

▪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에 그 사유 및 면제금액을 기재하고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9조제4항).

낙찰취소

▪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낙찰이 취소됩니다(「(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9조제3항).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

▪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 낙찰자는 총공사낙찰금액을 부기하고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 공사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 경우 제2차 공사 이후의 계약은 총공사낙찰금액(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금액을 말함)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附款)으로 약정해야 합니다(「(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9조제4항).

공사의 분할계약금지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동일 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제1항 본문).

> ※ 법령용어해설

· 동일구조물공사 : “동일구조물공사”란 천연 또는 인조의 재료를 사용하여 그 사용목적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진 기능이 상호 연결되는 일체식 구조물(그 부대공작물을 포함)로서 동일인이 계속하여 시공함이 적합한 시설물을 말합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5조제1호).

· 단일공사 : “단일공사”란 다음의 경우를 말합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5조제2호).

1) “단일공사”란 해당연도 예산상 특정단일사업으로 책정된 공사와 그 시공지역에서 이와 관련하여 시공되는 부대공사를 말합니다.

2) 예산상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 예산집행과정에서 특정되는 공사에 대하여는 1)을 준용합니다.

3) 면허나 자격요건 등으로 법령에 따라 공사를 분할 발주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 발주하는 공사를 각각 단일공사로 봅니다(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미한 공사는 제외).

공사의 분할계약금지 예외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분할계약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제1항 단서).

▹ 다른 법률에 따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

▹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분할 시공함이 효율적인 공사

▹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분리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

√ 설계서가 별도로 작성되는 공사

√ 공사의 성격상 공사의 종류별로 시공의 목적물, 시기와 장소 등이 명확히 구분되는 공사

계약문서

계약문서의 효력

▪ 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서, 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집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조제1항 본문).

▹ 다만, 산출내역서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집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조제1항 단서).

계약서 작성

계약서 작성

▪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명백하게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본문).

▹ 계약의 목적

▹ 계약금액

▹ 이행기간

▹ 계약보증금

▹ 위험부담

- 지체상금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계약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

▪ 다음의 경우에는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단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각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회계경리에 관한 서식이 따로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자로부터 청구서·각서·협정서·승낙사항 등 계약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비치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0조).

계약 성립

계약의 성립

▪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담당공무원과 계약자가 계약서에 기명하고 날인(외국인에 대해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 포함)하거나 서명함으로써 확정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20조).

4.2. 계약의 방식

4.2.1. 공동계약

공동계약

공동계약의 체결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자를 둘 이상으로 하는 공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공동계약에 따르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공동계약에 따라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제2항).

> ※ 법령용어해설
>
> · “공동계약”이란 공사·제조·그 밖의 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과 공동수급체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2조제1호).
>
> · “공동수급체”란 구성원을 2인 이상으로 하여 수급인이 해당 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결성한 실체를 말합니다(「(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2조제2호).

지역의무 공동계약

▪ 공동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있는 자 중 1인 이상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지역에 공사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제3항).

- 추정가격이 88억원 미만이고 건설업 등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
- 저탄소·녹색성장의 효과적인 추진,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다음의 사업(건설업의 등록을 한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계약대상자에 포함된 경우는 제외)(「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제3항제2호에 따른 공동계약 대상사업」)
  - √ 국도, 인입철도, 산업단지 조성 등 사업
  - √ 철도, 고속국도 건설사업

▪ 지역의무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되는 지역업체는 입찰공고일 현재 90일 이상 해당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소재한 업체여야 합니다(「(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제7항).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해당 지역의 업체와 그 외 지역의 업체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제4항).

설비공사의 공동계약

▪ 계약담당공무원은 설비공사를 발주할 경우에는 설비제조업체와 시공업체간 분담이행방식에 따른 공동계약방법으로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습니다(「(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8조의2제1항 본문).

- 다만, 단일 설비제조업체의 설비부분이 전체 추정가격의 50% 이상일 경우에 한합니다(「(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8조의2제1항 단서).

공동계약의 유형

공동이행방식

▪ "공동이행방식"이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연대하여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공동계약을 말합니다(「(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2조의2제1호).

분담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이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일정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공동계약을 말합니다(「(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2조의2제2호).

주계약자관리방식

▪ "주계약자(주계약자관리방식의 공동계약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전체 건설공사의 이행에 관하여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을 하는 자)관리방식"이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주계약자를 선정하고, 주계약자가 전체 건설공사 계약의 수행에 관하여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을 하는 공동계약을 말합니다(「(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2조제5호 및 제2조의2제3호).

공동수급체의 구성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의 자격요건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면허·허가·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격요건은 다음에 따라 구비해야 합니다(「(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제1항).

-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 구성원 공동
-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 구성원 각각
- 주계약자관리방식의 경우
  - √ 주계약자 : 전체공사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요건
  - √ 구성원 : 분담공사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요건

▪ 제한경쟁입찰에 따른 시공능력, 공사실적, 기술보유상황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면허와 동일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의 것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제2항).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동일한 입찰에서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제3항에 따른 공동계약의 경우와 주계약자관리방식에 따른 공동계약의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 계열회사 간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해서는 안 됩니다(「(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제4항).

공동수급체 대표자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상호 협의하여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선임하되,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갖춘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해야 합니다(「(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4조제1항 본문).

- 다만,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주계약자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됩니다(「(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4조제1항 단서).

▪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 및 제3자에 대해 공동수급체를 대표합니다(「(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4조제2항).

▪ 종합심사낙찰제 대상 공사 입찰의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이 100분의 5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4조제5항 본문).

- 다만, 주계약자관리방식에 따른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공사의 내용 및 특성에 따라 분담내용을 정합니다(「(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4조제5항 단서).
  - √ 주계약자관리방식에서 대표자는 공사시방서·설계도면·계약서·예정공정표·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안전 및 환경관리계획·산출내역서 등에 따라서 품질 및 시공을 확인해야 하고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시공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받습니다(「(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4조제3항).
  - √ 주계약자관리방식에서 대표자는 공사 진행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을 감안해 공동수급체 구성원과의 협의를 거쳐 자재 및 장비 등의 조달을 일원화하여 관리해야 합니다(「(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4조제4항).

공동계약 유형별 구성원 수와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 공동계약 유형별 구성원 수와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제5항 본문).

- 분담이행방식에 따른 경우 : 5인 이하
- 공동이행방식에 따른 경우 : 5인 이하, 10% 이상(다만, 대형공사계약 및 기술제안입찰 등에 따른 계약으로 하는 공사 중 추정가격이 1,00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에는 10인 이하, 5% 이상)
- 주계약자관리방식에 따른 경우 : 10인 이하, 5% 이상

▪ 다만, 해당 계약의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해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동계약의 유형별 구성원 수와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각각 20% 범위내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제5항 단서).

▪ 지역의무 공동계약의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 지역의무 공동계약의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역업체의 최소지분율을 다음과 같이 정할 수 있으며, 이를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합니다(「(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제6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제3항).

√ 추정가격이 88억원 미만이고 건설업 등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30% 이상(「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

√ 저탄소·녹색성장의 효과적인 추진,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된 다음의 사업(건설업의 등록을 한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계약자에 포함되는 경우를 제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제3항제2호에 따른 공동계약 대상사업」)

1. 국도, 인입철도, 산업단지 조성 등 사업: 40% 이상(다만, 대형공사계약 및 기술제안입찰 등에 따른 계약으로 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20% 이상)

2. 철도, 고속국도 건설사업: 20% 이상

공동계약의 입찰 및 계약 절차

공동계약의 입찰공고

▪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를 할 때 가능한 한 공동계약이 가능하다는 뜻을 명시해야 합니다(「(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8조제1항).

▹ 다만, 동일현장에 2인 이상의 수급인을 투입하기 곤란하거나 긴급한 이행이 필요한 경우 등 계약의 목적·성질상 공동계약에 따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8조제1항).

▪ 공동계약으로 입찰 시 다음 사항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합니다(「(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8조제2항).

▹ 공동계약의 이행방식: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또는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이 혼합된 방식 중 어느 하나

▹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격제한 사항

입찰참가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입찰공고 내용에 명시된 공동계약의 이행방식에 따라 공동이행방식, 분舅鎌仙逆 또는 주계약자관리방식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참고해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합니다(「(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5조제1항 및 별첨 1부터 별첨 3까지).

▪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참가 신청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합니다(「(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5조제2항).

계약 체결

▪ 공동계약 체결 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담당 공무원과 계약자 모두가 계약서에 기명하고 날인하거나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

공동계약이행계획서 제출

▪ 공사 착공 시까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른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공동계약이행계획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3조제1항).

- 구성원별 이행 부분 및 내역서(이행 부분을 구분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
- 구성원별 투입 인원·장비 등 목록 및 투입시기
- 그 밖에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보증금의 납부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종 보증금 납부시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정한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분할 납부해야 합니다(「(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0조 본문).

- 다만, 공동이행방식 또는 주계약자관리방식에 따른 공동계약일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대표자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중 1인이 일괄 납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0조 단서).

주계약자관리방식에 따른 공동계약의 이행

▪ 주계약자 이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자신이 분담한 부분을 직접 시공해야 합니다(「(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3조제3항 본문).

- 다만,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종합건설업자인 경우에는 다른 법령이나 시공품질의 향상 및 현장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계약자와 합의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을 받아 하도급을 할 수 있습니다(「(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3조제3항 단서).

▪ 주계약자는 직접시공에는 참여하지 않더라도 시공관리, 품질관리, 하자관리, 공정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 시공의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만 참여하는 경우에도 계약을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3조제4항).

계약이행 책임

▪ 공동이행방식에 따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시공의무 이행에 대해 다음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합니다(「(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7조제1항).

- 공동이행방식에 따른 경우 : 구성원은 연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합니다.
- 분담이행방식에 따른 경우 : 구성원은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져야 합니다.
- 주계약자관리방식에 따른 경우 : 구성원은 각자 자신이 분담한 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되, 불이행시 그 구성원의 보증기관이 책임을 집니다.
  - √ 주계약자는 최종적으로 전체계약에 대해 책임을 지되, 불이행 시 주계약자의 보증기관이 책임을 집니다.
  - √ 다만, 주계약자가 탈퇴한 후 주계약자의 계약이행의무 대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주계약자 이외의 구성원은 자신의 분담부분에 대해 계약이행을 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대가 등의 지급

▪ 지급 신청방법

- 선금 또는 대가 등을 지급받으려면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하여 기재된 신청서를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제출해야 합니다(「(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1조제1항 본문).
  - √ 다만,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파산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다른 모든 구성원의 연명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1조제1항 단서).

▪ 대가 등의 지급방법

▹ 대가 등의 지급 신청이 있을 경우 신청된 금액을 공동수급체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합니다(「(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1조제2항 본문).

√ 다만, 선금은 주계약자관리방식에 따른 공동계약일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파산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외하고는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지급합니다(「(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1조제2항 단서).

▹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및 각 구성원의 이행내용에 따라 지급합니다. 이 경우 준공대가 지급 시에는 구성원별 총 지급금액이 준공당시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과 일치해야 합니다(「(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1조제3항).

공동도급내용의 변경

공동도급내용의 변경

▪ 공동계약을 체결한 후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2조제1항 본문).

▪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도급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2조제1항 단서 및 제4항).

▹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그 밖의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해 구조조정 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해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 주계약자관리방식에서 구성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지체하여 이행하는 경우 또는 주계약자의 계획·관리 및 조정 등에 협조하지 않아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이 경우 주계약자는 변경사유와 변경내용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해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주계약자의 변경내용이 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저해하지 않는 한 승인해야 합니다(「(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2조제4항 후단).

공동도급내용의 이전

▪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변경을 승인하는 경우 구성원 각각의 출자지분 또는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2조제2항 본문).

▹ 다만, 주계약자관리방식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해산,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변경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있습니다(「(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2조제2항 단서).

구성원의 추가

▪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추가할 수 없습니다(「(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2조제3항 본문).

▪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되어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구성원의 추가를 요청하면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추가하게 할 수 있습니다(「(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2조제3항 단서).

▹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

▹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해 구조조정 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시공능력 및 실적 등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제재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습니다(「(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3조제5항).

▹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지 않는 구성원(단순히 자본참여만을 한 경우 등을 포함)

▹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과 다르게 시공하는 구성원

▹ 주계약자관리방식에서 주계약자 이외의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사전서면 승인 없이 직접 시공하지 않고 하도급한 경우

▪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사유를 발생시킨 자 및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해당 구성원에 대해서는 해당 사실이 있은 후 지체 없이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7조제2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3항).

4.2.2. 그 밖의 계약

계속비 계약

계속비 계약의 체결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재정법」 제23조에 따른 계속비사업에 대하여는 총액과 연부액을 명백히 하여 계속비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장기계속계약

장기계속계약의 체결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이 필요한 계약의 경우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계약을 이행하게 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장기계속공사

▪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입찰 시 총공사를 대상으로 하여 입찰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8항).

> ※ 법령용어해설
>
> · "장기계속공사"란 이행에 수년이 걸리며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의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를 말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2항 참조).

▪ 장기계속공사는 낙찰 등에 따라 결정된 총공사금액을 부기하고 해당 연도의 예산의 범위에서 제1차 공사를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제2항 전단).

▪ 위의 경우 제2차 공사 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공사금액(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그 밖의 계약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금액을 말함)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제2항 후단).

▪ 제1차 및 제2차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공사의 계약단가에 따라 결정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제4항).

단가계약

단가계약의 체결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일정 기간 계속하여 수리 등의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단가(單價)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개산계약

개산계약의 체결

▪ 공공기관과의 관계 법령에 따른 위탁 또는 대행 계약으로서 미리 가격을 정할 수 없을 때에는 개산계약(槪算契約)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3호).

개산계약 체결 시 준수사항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개산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미리 개산가격을 결정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제1항).

▪ 각 중앙관서의 장은 개산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 전에 계약목적물의 특성·계약수량 및 이행기간 등을 고려해 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해야 하며, 이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제2항).

▪ 계약담당공무원은 개산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이를 감사원에 통지해야 하며,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 및 예정가격의 결정기준 등에 따라 정산해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제2항·제3항 및 제9조).

종합계약

종합계약의 체결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같은 장소에서 다른 관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이 관련되는 공사 등에 대해 관련 기관과 공동으로 발주하는 계약(이하 ´종합계약´이라 함)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 종합계약을 체결하는 데 관련되는 기관의 장은 그 계약체결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협조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 ※ 그 밖에 종합계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계약예규) 종합계약집행요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의 체결

▪ 입찰 전에 예정가격을 구성하는 일부 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원가검토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정가격 중 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제94조제1항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제1항).

▹ 위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입찰 전에 계약목적물의 특성·계약수량 및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사후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해야 하며, 이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제2항).

▪ 추정가격 중 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를 감사원에 통지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제3항).

▪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예정가격의 결정기준 및 사후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 등에 따라 원가를 검토하여 정산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제2항·제4항 및 제9조).

4.3. 계약의 보증

4.3.1. 계약이행 보증

계약의 이행보증

계약이행보증 방법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법 제21조에 따른 장기계속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자가 다음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계약이행을 보증하게 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본문).

1. 법 제50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납부하는 방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제1호).

2.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않고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

※ 이때 공사이행보증서는 해당 공사의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40(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제2호 본문).

※ 다만,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20(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제2호 단서).

▪ 다만,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보증의 방법을 위 2.에 따른 방법으로 한정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단서).

계약이행보증 방법의 변경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로서 계약자가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변경하게 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2항).

계약보증금의 면제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자에 대하여는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단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제5호의2 및 제50조제6항제1호·제3호·제4호).

1.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 또는 출자(법률에 따라 귀속시킨 경우 포함)한 법인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 및 그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포함),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어촌계·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 녹색기술·녹색사업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거나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업체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2조)

2.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계약의 관습에 따라 계약보증금 징수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위의 1, 2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계약서에 그 사유 및 면제금액을 기재하고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의 계약보증금의 지급을 확약하는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4항, 제50조제10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9조제4항).

계약보증금의 반환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납부된 계약보증금의 보증목적이 달성된 때에는 계약자의 요청에 따라 즉시 반환하도록 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3조제1항).

공사이행보증서에 의한 이행보증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의 이행보증을 위해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4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6조제2항).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위의 청구에 따라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이 지정한 업체(이하 ´보증이행업체´라 함)가 그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계약금액 중 보증이행업체가 이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에 지급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할 때에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4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6조제3항).

▹ 이때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위에 따라 보증이행업체로 된 자가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에 보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4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6조제4항).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국고귀속사유

▪ 계약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1항 전단).

▹ 다음의 경우에는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2항).

√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관한 계약(단가계약은 제외)의 경우로서 기성부분을 검사를 거쳐 인수(인수하지 않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 경우: 당초의 계약보증금 중 기성부분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은 제외하고 국고에 귀속

※ 위의 내용은 2022. 6. 14.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2022. 6. 14. 이후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조).

√ 단가계약의 경우로서 여러 차례로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 당초의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부분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은 제외하고 국고에 귀속

※ "단가계약"이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일정 기간 계속해 제조, 수리, 가공, 매매, 공급, 사용 등의 계약을 할 필요가 있을 때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단가(單價)에 대해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 계약자는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후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2항 및 제51조제5항).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시 통지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경우에는 계약에 특별히 정한 것이 없는 한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계약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1항 후단 및 제75조제1항).

▪ 장기계속계약에 있어서 계약자가 2차 이후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위와 마찬가지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하며,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1항·제3항 및 제75조제1항).

상계처리

▪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경우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4항 본문).

▪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시켜야 하는 계약보증금은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4항 단서).

4.3.2. 손해보험 가입

손해보험

보험의 가입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해 손해보험(손해공제를 포함)에 가입하거나 계약자가 손해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제1항).

▪ 계약자는 발주기관이 작성한 예정가격조서의 보험료 또는 계약자가 제출한 입찰금액 산출내역서상의 보험료와 계약자가

손해보험회사에 실제 납입한 보험료 간의 차액발생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하거나 그 차액의 정산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0조제6항).

손해보험 의무 가입

▪ 계약담당공무원은 대형공사계약, 기술제안입찰 등에 따른 계약 및 추정가격 200억원 이상인 공사로서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6조제5항제1호에 따른 공사에 대하여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하거나 계약자에게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하도록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보험가입 등과 관련하여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5조제1항).

손해보험 가입

보험가입금액

▪ 계약목적물에 대한 손해보험 가입금액은 공사의 보험가입 대상 부분의 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손해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7조제1항).

피보험자

▪ 계약자는 손해보험가입 시 발주기관, 계약자, 하수급인 및 해당 공사의 이해관계인을 피보험자로 해야 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0조제2항 전단).

보험의 가입시기

▪ 계약담당공무원은 보험가입을 공사착공일 이전까지 가입하거나 계약자에게 가입하게 해야 하고 그 증서를 착공신고서 제출 시 발주기관에 제출하게 해야 합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9조제1항).

보험의 가입기간

▪ 보험기간은 해당 공사 착공 시(손해보험가입 비대상공사가 포함된 공사의 경우에는 손해보험가입 대상공사 착공일을 말함)부터 발주기관의 인수 시(시운전이 필요한 공사인 경우에는 시운전 시기까지 포함)까지로 해야 합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9조제2항).

보험금 수령 시 유의사항

▪ 계약자는 보험가입 목적물의 보험사고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해당 공사의 복구에 우선 사용해야 하며,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부족하게 지급되는 경우에도 이를 이유로 피해복구를 지연하거나 거절해서는 안 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0조제7항).

▪ 계약자는 보험사고 발생으로 발주기관 이외의 자가 보험금을 수령하게 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장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0조제2항 후단).

손해보험계약 권리·의무의 승계

▪ 계약자는 손해보험 가입 시 보증기관이 시공하게 될 경우에 계약자의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가 보증기관에 승계되도록 하는 것을 포함해야 하며,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후에 새로운 계약자가 선정될 경우에도 계약자의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가 새로운 계약자에게 승계되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해야 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0조제5항).

4.3.3. 하자보증

계약의 담보책임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하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 함)을 정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 전단).

▪ 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하자담보책임기간)은 다음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 후단 및 「민법」 제671조제1항).

- 토지, 건물 그 밖에 공작물 또는 지반공사의 하자: 5년
- 석조, 석회조, 연와조, 금속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료로 조성된 목적물의 하자: 10년

하자담보책임기간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공사계약의 부분 완료로 관리·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부분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공고에 따라 관리·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공사의 종류별 구분에 따른 기간동안 해당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제1항 본문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0조제1항 본문).

- 다만, 국가유산 수리공사를 제외한 각 공사의 종류 간의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된 공사의 종류를 기준으로 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0조제1항 단서).

▪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사의 종류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정하였거나 다음에 해당하는 기간과 다르게 정해 계약을 이행 중인 경우에는 계약서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다음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조정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0조제1항 및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3조제3항).

- 건설공사(자갈도상 철도공사 제외)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기간
- 건설공사 중 자갈도상 철도공사(궤도공사 부분으로 한정) : 1년
- 공동주택건설공사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및 별표 4에 따른 기간
- 전기공사 :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3의2에 따른 기간
- 정보통신공사 : 공사 종류에 따라 1년, 3년, 5년(「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7조)
- 소방시설공사 : 소방시설에 따라 2년 또는 3년(「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6조)
- 국가유산 수리공사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에 따른 기간
- 지하수개발·이용시설공사나 그 밖의 공사와 관련한 법령에 따른 공사 : 1년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지 않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제1항 단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0조제2항 및 제72조제2항).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업종의 업무내용 중 구조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
- 단순암반절취공사, 모래·자갈채취공사 등 그 공사의 성질상 객관적으로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않은 공사
- 계약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공사(조경공사 제외)

▪ 장기계속공사(이행에 수년이 걸리고 설계서 등에 의하여 전체의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제2항 본문).

▹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공사인 경우에는 제1차 계약을 체결할 때에 총공사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제2항 단서).

하자보수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자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해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률에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함)을 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본문 및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4조제1항).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금액 x 하자보수보증금률

▪ 하자보수보증금률은 다음의 공종(각 공종간의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된 공종을 말함) 구분에 따라 정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제1항 본문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1. 철도·댐·터널·철강교 설치·발전설비·교량·상하수도구조물 등 중요 구조물공사 및 조경공사 : 100분의 5
2. 공항·항만·삭도설치·방파제·사방·간척 등 공사 : 100분의 4
3. 관개수로·도로(포장공사 포함)·매립·상하수도관로·하천·일반건축 등 공사 : 100분의 3
4. 그 밖의 공사 : 100분의 2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 하자보수보증금은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포함. 이하 같음) 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 등으로 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및 제62조제5항).

1. 금융기관 및 외국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2. 증권
3.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4.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

√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

√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제조합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공제조합

√ 「산업발전법」에 따른 공제조합

√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전력기술인단체(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단체에 한정함)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제조합

√ 「골재채취법」에 따른 공제조합

√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 「관광진흥법」에 따른 한국관광협회중앙회

√ 「방위사업법」에 따라 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지정받은 자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공제조합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산업공제조합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협회

√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공제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른 콘텐츠공제조합

√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

√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에 따른 공간정보산업협회

√ 「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 따른 한국해양진흥공사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에 따른 조달기업공제조합

5. 위 1.에 따른 금융기관 및 외국금융기관과 체신관서가 발행한 정기예금증서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탁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기한

▪ 하자보수보증금은 해당 공사의 준공검사 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받기 전까지 하자보수보증금납부서와 함께 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제2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2조 및 별지 제12호서식).

▪ 장기계속공사는 연차계약별로 하자보수보증금을 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제3항 본문).

▹ 다만,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공사인 경우에는 총공사의 준공검사 후 하자보수보증금을 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제3항 단서).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면제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단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제4항).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 또는 출자(법률의 규정에 따라 귀속시킨 경우를 포함)한 법인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 및 그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포함),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어촌계·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제1항 단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제2항).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업종의 업무내용 중 구조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
- 단순암반절취공사, 모래·자갈채취공사 등 그 공사의 성질상 객관적으로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않은 공사
- 계약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공사(조경공사 제외)

▪ 위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의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 하자보수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해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4항 및 제62조제5항).

하자보수보증금의 반환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납부된 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목적이 달성된 때에는 계약자의 요청에 따라 즉시 반환하도록 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3조제1항).

▪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서로 다른 공종이 복합된 건설공사에서는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어 보증목적이 달성된 공종의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즉시 반환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3조제2항).

하자보수보증금의 국고귀속

▪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전단 및 제18조제3항 본문).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서 등으로 받은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의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해당 금융기관 또는 보증기관과 관계수입징수관 또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등에게 통지하고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으로 징수하게 하거나 정부소유 유가증권으로 전환하게 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1항 및 제62조제5항).
- 하자보수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자는 하자보수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후단, 제18조제3항 본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2항 및 제62조제5항).

5. 계약의 이행

5.1. 계약의 이행

5.1.1. 계약이행

공사용지 확인

공사용지의 확보

▪ 계약자는 현장에 인력, 장비 또는 자재를 투입하기 전에 공사용지의 확보 여부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1조제2항).

▪ 발주기관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까지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자에게 인도해야 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1조제1항).

착공 등

공사자재의 검사

▪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규격 등은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되어야 합니다. 다만, 설계서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자재는 표준품 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2조제1항).

▪ 계약자는 공사자재를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2조제2항).

공사 자재의 관급(官給)

▪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공사 발주 시 다른 공사부분과 하자책임 구분이 쉽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직접 공급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3조제1항).

▸ 자재의 품질, 수급상황, 공사규모 및 공사현장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 주무부장관(주무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자 포함)이 인정하거나 지정하는 신기술 인증제품인 경우

▪ 관급자재 등(관급자재 및 대여품을 말함)을 공급받거나 대여 받은 경우 관급자재 등은 설계서에 명시해야 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3조제1항).

공사현장 종사자

▪ 공사현장 대리인

▸ 계약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공사현장 대리인(「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 및 별표 5 등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자를 말함)을 지명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제1항).

▪ 공사현장 근로자

▸ 계약자는 해당 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해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5조제1항 본문).

√ 다만, 계약자가 근로자의 관리·감독에 상당한 주의와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5조제1항 단서).

착공 및 공정 보고

▪ 계약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를 착공해야 하며, 착공 시에는 다음의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7조제1항 본문).

- 착공신고서
-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현장기술자지정신고서
- 공사공정예정표
-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 착공 전 현장사진
- 그 밖에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사항

※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 등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7조제1항 단서).

▪ 계약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설계변경 또는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착공 시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 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해야 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7조제3항).

감독

감독기관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서, 설계서,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직접 감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해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본문).

▪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해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단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제1항).

-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또는 그 밖에 공사 관련 법령상 의무적으로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해야 하는 공사계약
-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감독을 할 수 없는 도급계약

▪ 수중 또는 지하에 매몰하는 공작물, 그 밖에 준공 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공작물의 공사는 공사감독관의 참여 하에 시공해야 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2조제7항).

5.2. 계약금액 조정

5.2.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요건

조정요건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을 체결한 다음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

▪ 다음의 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제1차 계약체결 시 부기한 총공사 금액)을 조정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1항).

▹ 공사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제1차 계약의 체결)한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

▹ 입찰일[수의계약(「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1항의 수의계약은 제외)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기준으로 하여 품목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

조정신청시기

▪ 계약자는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조정신청을 해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제3항).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환율변동을 원인으로 하여 위의 계약금액 조정요건이 성립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7항).

조정제한기간

▪ 공사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해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1항 전단).

▹ 이 경우 조정기준일(조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말함)부터 90일 이내에는 계약금액을 다시 조정하지 못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1항 후단).

▪ 90일 이내에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 경우

▹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인하여 해당 조정제한기간 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5항).

품목조정률

▪ 품목조정률과 이에 관련된 등락폭 및 등락률 산정은 다음의 산식에 따릅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제1항 전단).

각 품목 또는 비목의 수량에 등락폭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

1. 품목조정률 = ———————————————————————

계약금액

※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한 경우에는 위의 산식 중 각 품목 또는 비목의 수량에 등락폭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에는 이 합계액에 비례하여 증감되는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제2항).

2. 등락폭 = 계약단가 × 등락률

※ 등락폭 산정은 다음 기준에 따릅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제3항).

√ 입찰당시가격 < 계약단가 < 물가변동당시가격: 등락폭 = 물가변동당시가격-계약단가

√ 입찰당시가격 < 물가변동당시가격 < 계약단가: 등락폭 = 0

물가변동당시가격-입찰당시가격

3. 등락률 = ——————————-——————-—-—-—-—-—-—-—

입찰당시가격

▪ 이 경우 품목 또는 비목 및 계약금액 등은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을 그 대상으로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제1항 후단).

▸ 계약단가 : 산출내역서상의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계약단가

▸ 물가변동당시가격 : 물가변동당시 산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

▸ 입찰당시가격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당시 산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

※ 물가변동당시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입찰 당시가격을 산정한 때에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제7항 본문).

▸ 다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 가격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 당시가격을 산정한 때에 적용한 방법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제7항 단서).

지수조정률

▪ 지수조정률은 계약금액(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을 대상으로 함)의 산출내역을 구성하는 비목군 및 다음의 지수 등의 변동률에 따라 산출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제4항).

1. 한국은행이 조사하여 공표하는 생산자물가기본분류지수 또는 수입물가지수
2.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결정·허가 또는 인가하는 노임·가격 또는 요금의 평균지수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조사·공표된 가격의 평균지수
4. 그 밖에 위의 1.부터 3.까지와 유사한 지수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지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청구

조정 청구

▪ 계약자는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조정신청을 해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제3항).

▪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조정 내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제4항).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계약금액의 조정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물가변동으로 계약금액을 증액하여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자로부터 계약금액의 조정을 청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제9항 전단).

▸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계약자와 협의하여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등을 조정해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제9항 후단).

▪ 품목조정률 및 지수조정률의 적용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시 동일한 계약에 대하여는 품목조정률을 적용하는 방법과 지수조정률을 적용하는 방법 중 하나의 방법에 따라야 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서에 계약자가 지수조정률의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률의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는 뜻을 명시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2항).

√ 이 경우 계약이행 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제2항 후단).

√ 다만,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에는 품목조정률에 따릅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제2항 단서).

계약금액의 조정금액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그 조정금액은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이하 "물가변동적용대가"라 함)에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을 곱하여 산출하되, 계약상 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이를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제5항 본문).

조정금액 = 물가변동적용대가 x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

▹다만, 정부에 책임이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이를 포함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제5항 단서).

▪계약자에게 선금을 지급한 경우의 공제금액 산출은 다음 산식에 따릅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3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제6항 전단).

▹이 경우 장기계속공사계약 또는 계속비예산에 따른 계약 등에 있어서의 물가변동적용대가는 해당 연도 계약체결분 또는 해당 연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제6항 후단).

공제금액 = 물가변동적용대가 ×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 × 선금급률

단품슬라이딩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의 경우 특정규격의 자재(해당 공사비를 구성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합계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는 자재만 해당)별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산정한 해당 자재의 가격증감률이 100분의 15 이상인 때에는 그 자재만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6항).

▹위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였으나 계약자가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 하수급인은 이러한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통보받은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를 확인한 후에 계약자에게 계약금액 조정신청과 관련된 필요한 조치 등을 해야 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제7항).

5.2.2.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설계변경

설계변경 사유

▪설계변경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제1항).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 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 설계변경은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의2제1항 본문).

▪ 다만,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 시공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의2제1항 단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계약금액의 조정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을 체결한 다음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

▪ 공사계약의 경우 설계변경으로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1항 본문).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을 증액하여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자로부터 계약금액의 조정을 청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의2제2항 및 제74조제9항 전단).

-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계약자와 협의해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등을 조정해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의2제2항 및 제74조제9항 후단).

▪ 계약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조정신청을 해야 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10항).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심의 및 승인

▪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설계변경을 사유로 증액조정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증액조정금액(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서는 그 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해 감액 또는 증액조정된 금액과 증액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함)이 당초 계약서의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부기된 총공사금액을 말함)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 예산집행심의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2항).

계약금액 조정기준

▪ 계약금액 조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3항).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라 함)로 합니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합니다.
2.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3. 정부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포함)에는 위의 1. 및 2.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 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 계약자 간에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다만, 계약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합니다.

▪ 새로운 기술·공법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되어 계약자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설계변경을 한 때에는 계약금액의 조정에 있어서 해당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4항).

▪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은 산출내역서상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등을 따르되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으로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6항).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

▪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고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그 물량내역서의 누락 사항이나 오류 등으로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1항 단서).

5.2.3.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계약금액의 조정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에서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제1항).

▪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은 산출내역서상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등을 따르되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으로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6항 및 제66조제3항).

▪ 계약금액을 증액하여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자로부터 계약금액의 조정을 청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제9항 전단 및 제74조의3제2항).

▹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계약자와 협의해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등을 조정해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제9항 후단 및 제74조의3제2항).

계약내용의 변경

▪ 공사기간, 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은 그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의3제1항 본문).

▹ 다만,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계약을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자와 협의하여 계약내용 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계약내용을 변경하기 전에 우선 이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의3제1항 단서).

> ※ 실비 산정 기준 및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6장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3. 공사대가 지급

5.3.1. 선금 지급

선금지급 신청

선금지급 사유

▪ 공사계약에서 계약자가 선금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선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제1항제1호).

▹ 이때 선금을 지급받으려면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않아야 합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제1항제2호).

▪ 이 경우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해 대가를 지급한 때에는 계약금액(단가계약의 경우에는 발주금액)에서 그 대가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제5항).

선금지급 신청서류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자가 위에 따라 선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지급계획을 제출하도록 해야 합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제2항).

▪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른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해야 합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5조제1항 본문).

▹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중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특별법에 따라 정부가 보호 육성하는 법인으로서 정부가 출연한 법인,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어촌계·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위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도록 하지 않아도 됩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5조제1항 단서).

▹ 이 경우 반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자에게 선금잔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체신관서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포함)으로 반납할 것을 보장하기 위해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게 해야 합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5조제1항 후단).

선금 지급

선금지급의 대상 및 금액

▪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구분에 따른 선금은 계약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제3항).

▹ 공사

√ 계약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100분의 30

√ 계약금액이 2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40

√ 계약금액이 2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50

▹ 수해복구공사

√ 계약금액이 2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70

√ 계약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경우: 100분의 50

▪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자의 청구에 따라 위에 해당하는 금액 이외에 해당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제4항).

▹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 경우

▹ 계약자가 녹색기술·녹색사업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거나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 이 경우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해 대가를 지급한 때에는 계약금액(단가계약의 경우에는 발주금액)에서 그 대가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제5항).

선금지급의 요건

▪ 계속비와 명시이월비 예산에 따른 계약에 대해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중 해당 연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는 각 연차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제6항).

▪ 국고채무부담행위예산에 따른 계약에 대해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고채무부담행위액 상환을 위한 세출예산이 계상된 년도에만 할 수 있습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제7항).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행에 필요한 기간 등에 비추어 계약을 체결한 연도내에 해당 예산을 전액 집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해당 예산의 사고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을 체결한 연도내에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을 한도로 선금을 지급해야 하며, 지급해야 할 선금 중 미지급된 금액은 예산이 이월된 연도에 지급해야 합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제11항).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자에게 선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해야 합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제12항).

선금 지급의 예외

▪ 계약담당공무원은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선금 지급이 불가능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 계약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제8항).

▹ 이때 선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제9항).

√ 자금배정이 지연될 경우(다만, 자금배정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선금지급을 해야 함)

√ 계약체결 후 불가피한 사유로 이행착수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명백한 경우(다만, 해당 사유 해제시 즉시 선금지급을 해야 함)

√ 계약자로부터 선금지급 요청이 없거나 유예신청이 있는 경우

선금의 사용

선금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선금을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6조제1항).

공사대금청구권의 양도

▪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따라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게 할 수 없습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6조제3항 본문).

▪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게 할 수 있습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6조제3항 단서).

선금내역의 확인

▪ 계약담당공무원은 수급인에게 선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선금지급일부터 20일 이내에 계약자와 하수급인으로부터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선금배분 및 수령내역을 비교·확인해야 합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6조제4항).

선금의 정산

▪ 선금은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대가 지급시마다 다음 방식에 따라 산출한 선금정산액 이상을 정산해야 합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7조제1항).

선금정산액 = 선금액 × [기성(또는 기납) 부분의 대가상당액 / 계약금액]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 이행기간의 종료일 이전에 선금 전액의 정산이 완료된 경우로서, 계약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의 정산이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해야 합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7조제2항).

선금의 반환

선금잔액의 반환청구

▪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한 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잔액에 대해서 계약자에게 지체 없이 그 반환을 청구해야 합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8조제1항 본문).

-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 선금 사용계획 등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 선금사용내역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위·변조,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등 선금사용내역 확인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 다만,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해 청구해야 합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8조제1항 단서).

※ 이때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따르며, 계산기간은 반환시까지로 합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8조제2항).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지급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자가 하수급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환받은 선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8조제3항).

선금의 상계

▪ 선금 반환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합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8조제4항 본문).

▪ 다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으면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8조제4항 단서).

선금지급조건의 명시

조건의 명시

▪ 선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시에 채권확보조치, 선금의 사용, 정산 및 반환청구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선금지급 조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9조).

5.3.2. 기성대가 지급

기성검사

기성검사

▪ 계약자가 계약의 일부를 이행하면 계약서, 설계서,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기성검사를 받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본문).

▪ 기성검사는 공사감독관이 작성한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3회마다 1회는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7항).

기성부분

▪ 자재의 기성부분 인정 여부

▹ 기성검사 시 검사에 합격된 자재라도 단순히 공사현장에 반입된 것만으로는 기성부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제9항 본문].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 자재의 특성, 용도 및 시장거래 상황 등을 고려해 반입(해당 자재를 계약목적물에 투입하는 과정의 특수성으로 인해 가공·조립 또는 제작하는 공장에서 기성검사를 실시해 합격한 경우 포함)된 자재를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제9항 단서).

√ 강교 등 해당공사의 기술적·구조적 특성을 고려하여 가공·조립·제작된 자재로서, 다른 공사에 그대로 사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재: 자재의 100분의 100 범위 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

√ 그 밖에 계약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된 자재: 자재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

시정조치

▪ 기성검사에서 계약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시정조치를 합니다. 이 경우 계약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검사기간을 계산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6항).

▹ 시정조치에 따라 계약이행 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지체상금이 부과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제4항).

기성부분 인수

기성부분의 인수

▪ 계약담당공무원은 전체 공사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함)에 대해 이를 인수할 수 있습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9조제1항).

▪ 기성부분 인수의 절차 및 방법은 완성된 전체 공사목적물의 인수의 경우와 같습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9조제2항).

> ※ 기성부분 인수의 절차 및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국가 공사계약자』의 <계약의 이행-공사대가 지급-준공대가 지급>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성대가의 지급

기성대가 지급청구

▪ 계약자는 최소한 30일마다 기성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대가 지급청구를 할 수 있으며,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제1항·제4항 및 제39조의2제2항).

-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 및 자재·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과 하수급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지급계획을 첨부)
- 자재에 대한 기성대가를 지급받으려 경우: 지급대가에 상당하는 보증서
-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개산급신청사유를 작성한 서면

▪ 계약자의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청구와 관련해 다음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4조제1항].

-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하수급인의 보험료 납입확인서 포함)
- 전(前) 회분 기성대가에 포함해서 지급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지급액 중 해당 부분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

기성대가의 지급

▪ 기성검사 후 또는 검사조서 작성한 후에 기성대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제관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은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 등을 고려해서 적어도 30일마다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제3항).

▪ 계약자는 기성검사를 완료하는 날 이전까지 대가지급 청구를 할 수 있으며, 검사완료일부터 5일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대가가 확정되어 지급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제4항 본문).

- 다만, 계약자가 검사완료일 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받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제4항 단서).

▪ 그 밖에 기성대가의 지급기한 및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지급은 준공대가의 경우와 같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및 제59조 참조).

> ※ 기성대가의 지급기한 및 대가지급지연의 이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국가 공사계약자』의 <계약의 이행-공사대가 지급-준공대가 지급>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액조정 전의 기성대가 지급

▪ 계약담당공무원은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의2제1항 본문).

▹ 다만,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해야 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의2제1항 단서).

5.3.3. 준공대가 지급

준공검사

준공검사

▪ 계약자가 계약의 전부를 이행하면 계약서, 설계서,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본문).

▪ 계약자는 공사를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신고서 등 서면으로 계약담당공무원(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건설기술용역업자를 말함)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제1항).

▪ 계약자는 준공검사에 입회하고 협력해야 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제5항).

▹ 계약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않아 지체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받고,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검사기간을 계산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제3항).

▹ 이 경우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지체상금이 부과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제3항 후단 및 제4항).

검사기간

▪ 준공검사는 계약자로부터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2025. 7. 1.부터 2025. 12. 31.까지는 계약자로부터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1항 본문,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제2항 본문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제2조).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1항 단서, 제5항 및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제2항 단서).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공사계약금액(관급자재가 있는 경우에는 관급자재 대가 포함)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기술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7일의 범위에서 위의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시정조치

▪ 준공검사 시 계약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시정조치를 합니다. 이 경우 계약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검사기간을 계산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6항).

▪ 시정조치에 따라 계약이행 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지체상금이 부과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제4항).

검사완료통지

▪ 준공검사가 완료된 때에는 그 결과가 지체 없이 계약자에게 통지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제6항 전단).

▹ 계약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제6항 후단).

▪ 계약자는 검사완료 통지를 받은 때에는 모든 공사시설, 잉여자재, 폐기물 및 가설물을 공사장으로부터 즉시 철거반출해야 하며 공사장을 정돈해야 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제7항).

완성된 공사목적물의 인수

공사목적물의 인수

▪ 검사완료 통지를 받은 후 계약자는 완성된 공사목적물의 인수를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8조제1항 참조).

▪ 계약담당공무원은 위의 인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공사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자에게 다음의 사항이 첨부된 준공명세서를 제출하게 해야 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8조제2항).

▹ 완성된 공사목적물의 전면·후면·측면사진(10″× 15″) 각 5매 및 사진원본파일

▹ 주요 검사과정을 촬영한 동영상물(CD 등) 5본

▹ 착공에서 준공까지의 행정처리과정, 참여기술자, 관련 참여업체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준공보고서

▪ 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완료통지를 한 후에 계약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했을 때에는 즉시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해당 공사목적물을 인수해야 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8조제1항).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자가 검사완료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인수요청을 하지 않을 때에는 계약자에게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해당 공사목적물을 인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지체 없이 준공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8조제3항).

준공대가의 지급

준공대가의 지급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제관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검사를 하거나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공사계약의 대가를 지급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대가 지급기한

▪ 공사계약의 대가는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자의 대가지급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2025. 7. 1.부터 2025. 12. 31.까지는 계약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에 지급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제1항 전단·제6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제2조).

▹ 이 경우 계약당사자와 합의하여 5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가의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제1항 후단 및 제6항).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지급기한 내에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3일 이내(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에 대가를 지급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제2항 및 제6항).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대가지급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해서 계약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반송한 날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 기간은 대가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않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제5항).

대가 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대금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대가지급기한(국고 채무부담행위에 따른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 해당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가지급지연일수에 해당 미지급 금액 및 대출평균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

대가 지급지연 이자 = 대가지급지연일수 x 미지급 금액 x 대출평균금리

▸ "대가지급지연일수"는 지급기한의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를 말하며, 불가항력인 사유로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대가지급 연장기간은 대가지급 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1조).

▸ "대출평균금리"는 지연발생 시점의 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말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

▪ 동일한 계약에서 대가 지급지연에 대한 이자와 지체상금은 상계(相計)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공사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준공대가의 정산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대가의 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포함해 해당 계약 전체에 대한 보험료 납부 여부를 최종 확인해야 하며, 이를 확인 후 입찰공고 등에 고지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 내에서 최종 정산해야 합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4조제2항 본문].

▪ 사업자 부담분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대한 납입확인서의 금액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정산합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4조제3항).

▸ 일용근로자는 해당 사업장 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합니다.

▸ 생산직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에 따라 정산하되 현장인 명부 등을 확인하여 해당 사업장 계약이행기간 대비 해당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현장명부 등 발주기관이나 감리가 확인한 서류에 따름)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합니다.

√ 다만, 해당 사업장 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 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합니다.

▸ 퇴직급여충당금은 계약체결 후 발주기관이 승인한 산출내역서 금액과 계약자가 실제 지급한 금액을 비교하여 정산합니다.

5.4. 하자보수

5.4.1. 하자검사

하자검사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하자검사

▪ 하자검사는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1항).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 시 최종검사

▪ 계약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따로 최종검사를 받아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1조제1항 및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5조제2항 전단).

▹ 이 경우에 최종검사에서 발견된 하자는 하자보수완료확인서가 발급되기 전까지 계약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보수해야 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5조제2항 후단).

계약자의 하자검사 입회

▪ 계약자는 하자검사에 입회해야 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5조제3항 본문).

▪ 다만, 계약자가 입회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방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에 대해 계약자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5조제3항 단서).

하자검사 완료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

▪ 계약담당공무원은 최종검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계약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5조제2항).

▪ 계약자의 책임과 의무는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부터 소멸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5조제4항).

하자보수보증금 반환

▪ 하자보수보증금은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까지 반환받습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4조제3항 본문).

▹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서로 다른 공종이 복합된 건설공사에서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어 보증목적이 달성된 공종의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자가 요청할 경우 즉시 반환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4조제3항 단서).

5.4.2. 하자보수

하자보수책임

하자보수책임

▪ 계약자는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공사계약의 부분 완료로 관리·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부분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공고에 따라 관리·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을 말함)부터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공사목적물의 하자(계약자의 시공상 잘못으로 발생한 하자에 한함)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습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3조제1항).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하자검사 결과 하자가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1조제3항).

▸ 계약자는 하자보수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해야 하며,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 및 그 밖의 조치사항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3조제4항).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

▪ 하자보수를 위한 예산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해당 하자의 보수를 위해 직접 사용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 단서).

6. 계약불이행 등에 대한 조치

6.1. 입찰참가 제한

6.1.1. 입찰참가 제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 각 중앙관서의 장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함)에게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하며, 그 제한사실을 즉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전단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 참조).

▪ 이 경우 통보를 받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후단).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

▪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22조제1항].

1. 계약을 이행할 때에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2. 경쟁입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자 선정을 위해 담합한 자
3.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는 제외)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4.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 과정에서 국가에 손해를 끼친 자
5.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
6.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
7.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기술자문위원회, 그 밖에 종합심사낙찰제심사위원회, 제안서평가위원회,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을 포함)에게 뇌물을 준 자
8. 계약을 이행할 때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 규정을 위반하여 동시에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하게 한 자
9. 그 밖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입찰·계약 관련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입찰·계약을 방해하는 등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자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않거나 방해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
   다. 다른 법령을 위반하는 등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준 및 제한 내용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국가 공사계약자』의 <입찰에 따른 계약-입찰참가자격-입찰참가자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2. 계약이행의 지체

6.2.1. 지체상금

지체상금

지체상금의 지급사유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자는 지체상금을 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 계약자(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제외)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을 말함. 이하 같음)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않은 때에는 다음에 따라 계산된 지체상금을 현금으로 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1항 전단 및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제1항 본문).

지체상금 = 계약금액 x 지체상금률 x 지체일수

▪ 다만, 납부할 금액이 계약금액(기성부분에 대해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함)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제1항 단서).

※ 지체상금은 동일한 계약에서 계약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그 밖의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및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제7항).

계약금액

▪ 기성부분에 대해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인수하지 않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2항).

▪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계약금액은 연차별 계약금액을 말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1항).

지체상금률

▪ 공사계약의 지체상금률은 1천분의 0.5입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제1호).

지체일수

▪ 지체일수는 다음에 따라 산정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제6항).

▹ 준공기한 내에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준공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 다만, 준공기한 이후에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에 정한 기간에 한함. 이하 같음)을 지체일수에 산입합니다.

▹ 준공기한을 경과하여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준공기한 다음 날부터 준공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합니다.

▹ 준공기한의 말일이 공휴일[발주기관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계약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인 경우를 포함]인 경우에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다음 다음날부터 기산합니다.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해당 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1항 후단 및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제3항).

1. 태풍·홍수·그 밖의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그 밖에 계약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로 인해 공사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경우
2. 계약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이 불가능했을 경우
3.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4. 계약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해서 보증시공할 경우

√ 위에 따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는 기간은 발주기관으로부터 보증채무 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날까지(다만, 30일 이내에 한함)로 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제5항).

5. 설계변경(계약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에 한함)으로 인해 준공기한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6. 발주기관이 혁신제품을 자재로 사용토록 한 경우로서 혁신제품의 하자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준공기한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7.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 또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0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가격급등으로 인해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지연 또는 사급자재(관급자재에서 전환된 사급자재 포함)의 구입곤란 등 그 밖에 계약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해 지체된 경우

▪ 납부할 지체상금이 계약금액(기성부분에 대해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함)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3항).

지체상금의 사용

▪ 계약의 이행을 위한 예산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그 계약의 이행을 위해 직접 사용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 단서 및 제26조제3항).

계약기간의 연장

계약기간의 연장 사유

▪ 계약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연장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제1항 본문 및 제6항).

▹ 위 1.부터 6.까지의 사유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기간을 말함. 이하 같음) 내에 발생한 경우

▹ 계약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지연된 경우

계약기간의 연장신청

▪ 계약자는 위 1.부터 6.까지의 사유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지체 없이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수정공정표를 첨부한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해야 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제1항 본문).

▹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 후 종료된 경우에는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해야 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제1항 단서).

▪ 연장청구가 승인된 경우 연장기간에 대해서는 지체상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제3항).

계약금액 조정

▪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제4항 본문).

▹ 다만, 계약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해서 보증시공할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습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제4항 단서).

▪ 계약자는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해야 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제5항).

6.3. 부실시공 등에 대한 조치

6.3.1. 시정조치 등

준공검사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시정조치

▪ 준공검사에서 계약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시정조치를 받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6항 전단).

▪ 시정조치에 따라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지체상금이 부과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제4항).

「건설산업기본법」상 부실시공에 대한 조치

시정명령

▪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가 설계도서, 시방서 및 도급계약의 내용 등에 따르지 않는 등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10호).

영업정지

▪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가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경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그 건설사업자(하도급인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와 수급인을, 다시 하도급한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와 다시 하도급한 자를 말함)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제5호).

건설업의 등록말소

▪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가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해서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하도급한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와 수급인을, 다시 하도급한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와 다시 하도급한 자를 말함)의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0호).

공사의 일시정지

공사의 일시정지 사유

▪ 공사감독관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제1항).

- 공사의 이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해 공사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 재해방지 등을 위한 응급조치의 경우
- 그 밖에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시한 경우

▪ 공사가 정지된 경우 계약자는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제5항).

6.3.2. 공사계약의 해제 · 해지

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사유

▪ 계약자가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보증금이 국고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계약에 특별히 정한 것이 없는 한 해당 계약은 해제 또는 해지되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제1항).

▪ 지체상금의 징수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보증금 상당액(면제된 계약보증금 포함)에 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유지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제2항).

1.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수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고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2. 위 1. 외의 경우로서 계약자의 계약 이행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당초 계약보증금에 지체상금의 최대금액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함)을 추가로 납부하게 하고 계약을 유지

계약 해제 또는 해지 시 계약자의 준수사항

▪ 계약 해제 또는 해지 통지를 받은 계약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4조제3항).

- 해당 공사를 즉시 중지하고 모든 공사자재 및 기구 등을 공사장으로부터 철거해야 합니다.
- 발주기관으로부터의 대여품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 반환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대여품이 계약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되었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그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 관급재료 중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된 부분에 사용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 재료는 발주관서에 반환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재료가 계약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되었을 때, 또는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되지 않은

부분에 사용된 때에는 원상회복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공사장의 모든 재료, 정보 및 편의를 발주기관에 제공해야 합니다.

▪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계약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해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회사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가산해서 발주기관에 상환해야 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4조제5항).

▹ 이 경우 선금잔액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은 상계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4조제6항 본문).

기성대가의 지급

▪ 계약자는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기성부분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인수된 때에는 해당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받습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4조제4항).